

2025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의안번호 : 제3696호

다. 제출일자 : 2026. 5. 26.

라. 회부일자 : 2025. 5. 27.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결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3. 결산개요

가. 일반회계 및 소방특별회계

1) 세입결산

【일반회계】 해당없음

【소방특별회계】

세입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정리보류	미수납액	수납률(%) (B/A)
소방 특별회계	1,001,176	1,015,441	1,014,527	1,014,104	16	408	99.9

- 세입 예산현액은 1조 154억 41백만원이었으나 실제 1조 145억 27백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이 중 1조 141억 4백만원을 수납하고, 1천 6백만원을 정리보류하였으며, 4억 8백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고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임.

2) 세출결산

【일반회계】

세출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일반 회계	974,387	-	-	-	-	-	974,387	974,387	-	-	-	-	0

- 2025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세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기준 총 9,743억 87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9,743억 87백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음.

【소방특별회계】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합계	1,975,563	14,265		64 (-64)	2,989 (-2,989)		1,989,828	1,970,997	4,257		4,257	950	13,624
일반 회계	974,387						974,387	974,387					0
특별 회계	1,001,176	14,265		64 (-64)	2,989 (-2,989)		1,015,441	996,610	4,257		4,257	950	13,624

- 2025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세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9,743억 87백만원과 소방특별회계 1조 154억 41백만원을 포함하여 총계예산 규모로 총 1조 9,898억 2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이중 99.1%인 1조 9,709억 97백만원을 지출하고, 0.2%인 42억 57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7%인 136억 24백만원이 발생되었음.

3) 예산 이용 · 전용 · 이체 · 변경 · 예비비

【일반회계】

- 이용, 전용, 이체, 변경, 예비비
- 이용, 전용, 이체, 변경, 예비비 사용 없음.

【소방특별회계】

○ 이용

- 예산 이용 없음.

○ 전용

- 예산 전용은 4건에 29억 89백만원으로
- 수당 증가에 따른 인력운영비(인건비계정) 보수 부족분 29억 16백만원을 연금부담금(20억 3백만원)과 국민건강보험금(9억 13백만원)에서 각각 전용하였으며
- 공무원 의원면직 및 중도 퇴직 정산분 발생에 따른 공무원 보험료 부담금 부족분 6,300만원과
-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예산의 조기 소진에 따른 1,000만원임.

○ 이체

- 예산 이체 없음.

○ 변경

- 예산 변경은 3건에 6,400만원으로
- 도심 집회 등에 동원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동원 급량비 부족분 5,400만원
-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예산의 조기 소진으로 하반기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비 100만원
- 소방안전지도 단말기 통신료 부족분 900만원임

○ 예비비

- 예비비 사용 없음.

4)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42억 57백만원으로 전액 사고이월되었으며,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1조 9,898억 28백만원 대비 0.2%임.

5)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136억 24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1조 9,898억 28백만원 대비 0.7%에 해당하는 규모임.

집행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	비고
2025	1,989,828	13,624	0.7%	

- 발생원인별 내역

- 지출잔액 : 102억 12백만원
- 낙찰차액잔액 : 10억 39백만원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6억 97백만원
- 보조금정산잔액 : 6억 10백만원
- 예비비 : 10억 65백만원

4. 검 토 의 건

가. 일반회계

1) 세 입 결 산

○ 해당없음

2) 세 출 결 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5	974,387	-	-	-	-	-	974,387	974,387	-	-	-	-	0
2024	977,726	-	-	-	-	-	977,726	949,407	-	-	-	-	28,319
2023	945,505	-	-	-	-	-	945,505	945,505	-	-	-	-	0

가) 집행잔액 (불용액) (결산서 p.15)

○ 일반회계 세출은 전액 소방특별회계로의 전출금으로 회계간 이동에 따라 전액 집행함.

나. 소방특별회계

1) 세 입 결 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2025	1,001,176	1,015,441	1,014,527	1,014,104	16	408	99.9
2024	1,026,006	1,026,732	1,001,010	1,000,668	21	322	100.0
2023	977,242	983,108	986,444	986,129	33	282	100.0

가) 개요

- 세입 예산현액은 1조 154억 41백만원이었으나 실제 1조 145억 27백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이 중 1조 141억 4백만원을 수납하고, 1천 6백만원을 정리보류하였으며, 4억 8백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고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임.

나) 세수추계 (결산서 p.25~28)

- 소방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의 경우 세입예산현액 1조 154억 41백만원 대비 9억 14백만원이 감소한 1조 145억 27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일부 세입 중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간 세수추계의 차이가 3천만원 이상 혹은 30% 이상 발생한 항목들은 다음 [표]와 같음.

[표]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3천만원 이상 또는 30%이상 발생한 항목
(단위 : 천원)

편성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차액(c) (b-a)	증감률 (c/a*100)	비고
경상적 세외수입						
공 유 재 산 입 대 료	103,460	64,649	64,649	△38,811	△37.5%	은평소방서 녹번119안전센터에 임대 중인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사업 종료(2024년 하반기 퇴계)와 스토어 36.5 입주업체의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정책에 따라 총 징수결정액 및 수입이 감소
공 공 예 금 이 자 수 입	284,300	79,074	79,074	△205,226	△72.2%	세출계좌의 최근 3년 평균잔고와 이자율(공공예금 이자율 2.52%)을 반영하여 세입 예산을 추계하였으나, 소방특별회계 세출계좌 잔고를 활용한 장여금 미운용에 따른 공공예금이자수입 감소
기타이자수입	50,435	68,659	68,659	18,224	36.1%	법안카드통장 등 보통예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최근 5년 평균(최고, 최저 제외)액에 시금고 협약에 의한 이자율 증가분(1.52%~2.52%)을 반영하여 추계하였으나, 추계 대비 평균 잔고의 증가로 인하여 이자수입 증가

편성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차액(c) (b-a)	증감률 (c/a*100)	비고
임시적 세외수입						
불 용 품 매 각 대 금	328,679	199,484	199,484	△129,195	△39.3%	추계 대비 불용차량 및 불용품 매각 수량 감소에 따른 매각 수입 감소
위 약 금	121,323	51,592	51,592	△69,731	△57.5%	계약 전 사전절차 이행 및 체계적인 공 정관리를 통해 계약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자연 요인을 감소시켜 예산 대 비 세입액 감소
그 외 수 입	376,199	234,210	234,210	△141,989	△37.7%	과오납된 인건비, 수당 및 착오 지출된 세출 등의 잡수입으로 과오납 및 장란 환 급금이 감소하여 추계 대비 세입액이 감소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 징 금	123,930	26,351	26,351	△97,579	△78.7%	최근 3년('22~'24년) 평균 징수액으 로 예산 추계하였으나 부과 금액 감 소로 세입액 감소
이 행 강 제 금	15,000	40,000	0	25,000	166.7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 위반(간이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등)으로 원상복구 조치 명령과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연2회 범 위내에서 반복 부과징수가 가능하 여, 징수결장액 증가
기 타 과 태 료	891,736	940,576	872,879	48,840	5.5	소방관계 법령 위법행위의 증가 추 세로 화재취약 다중이용시설을 대상 으로 119기동단속팀을 운영하고 있 어 예산현액보다 징수 결정액 증가
지난연도수입						
지난연도수입	43,796	339,254	23,549	295,458	674.6	과년도 체납에 대한 수입으로 납부 독촉 및 적극적인 압류로 인하여 징 수 결정액 증가
지방교부세 등						
소 방 안 전 교 부 세	7,100,000	7,300,000	7,300,000	200,000	2.8	당초 '25년도 최초 예산 편성 당시 소 방안전교부세 특수수요분으로 69억원 을 편성하였음. 이후 소방안전교부세 확정 통보(25.1.23.) 에 따라 4억원(헬기 2억, 체험관 2억)이 증 액되어 최종 73억 교부받음. 그러나 당해연도 추경 편성과정에서 체 험관 사업 미추진에 따라 소방헬기 증 액분(2억원)만 예산에 반영하고 체험관 증액분(2억원)은 미편성함으로 예산액과 징수결장액 간의 불일치가 발생함.
보전수입 등						
민 간 용 자 금 회 수 수 입	4,374,000	3,586,000	3,586,000	△788,000	△18.0	2024년 이후 만기상환이 도래하는 지원시점(2018년 이후)의 지원규모 가 40억 이상이며, 만기상환 비율이 50%임을 감안하여 2024년 수준으 로 전망하였으나 전년수준으로 수납 되어 세입액 감소

-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는 예산액 1억 3백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이 6천 5백만원으로 3천 9백만원(37.5%)이 감소하였음.

[표] 2025년 공유재산 임대료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장소 (면적)	임대 방식	납부방법	2025			임대기간
					예산액	수납액	차액	
합 계					103,460	64,649	△38,810	
소 방 재난본부	(주)신한은행 본부출장소	본부1층 (98.55㎡)	유상	연간임대료 일시납	29,413	29,780	367	2026.1.1.~ 2026.12.31.
녹번119 안전센터 (은평소방서)	녹번 만화도서관 (은평구청)	녹번센터 대지(58㎡)	유상	연간임대료 일시납	6,433	6,818	386	2025.12.20. ~ 2026.12.19.
	스토어 36.5 (은평구청)	녹번센터 1층 (144.05㎡)	유상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33,334	28,051	△5,283	2026.1.1.~ 2026.12.31.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은평구청)	녹번센터3층 (216.65㎡)	퇴거		34,280	-	△34,280	2024.10.31. 임대종료
	청년취업사관 학교 은평캠퍼스 (서울특별시)	녹번센터 3층 일부, 4층 (771.25㎡)	무상	-	-	-	-	2025.7.1.~ 2029.12.31.
	서울소방공무원 노동조합 사무공간 (50㎡)	녹번센터3층 (50㎡)	무상	-	-	-	-	2025.1.1.~ 2029.12.31.

- 주요 감소 원인은 녹번119안전센터가 은평구청에 유상임대 중인 ‘스토어 36.5¹⁾’의 입점 업체(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꿈꾸는친구들협동

1) 스토어 36.5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공간 마련 사업비 지원사업」에 은평구청이 선정되어 조성한 ‘사회적기업 공동판매 플랫폼’으로 구청이 운영 사업자를 선정(내부 입점 업체는 변동 가능). 계약 당사자는 은평구청이나 임대료는 실제 입점 업체가 납부하고 수익도 각 업체에 귀속되는 구조임.

[표] 스토어 36.5 입점 업체 소상공인 등 임대료 감면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 임대료	2025년 예산액 (a)	징수액 (b)	감면액	수납액 (c)	차액1 (a-c)	차액2 (b-c)	비 고
스토어 36.5	은평두 레소비 자생활 (중기업)	23,943		24,538	5,985	18,552		전년도 대비 매출 15.6 3% 감소로 2025년 임대 료의 25% 감면(26년 임대료 징수 액에서 상계)
	꿈꾸는 친구들 (소상공인)	9,267		9,498	-	9,498		
합계		33,211	33,333	34,036	5,985	28,050	5,283	5,985

- 또한, ‘사회적경제허브센터’의 경우 당초 2025년도 예산 편성 당시 임대료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산을 추계하였으나, 예산 확정 직전 은평구청의 요청으로 임대차가 조기 종료(‘24.10.31.’)⁴⁾됨에 따라 해당 임대 수입이 소멸되어 전액 결손 처리되었음.

- 임대종료 시점 통보가 늦어 세입예산 변동 사항을 즉시 반영하기 어려운 점은 인정되나 향후에는 조기 임대 종료나 정책 감면 등 사업의 변동성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 예산안 의회 제출 전 변동사항을 최종 재점검하는 등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임.

○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예산액 2억 84백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7천 9백만원으로 2억 5백만원(72.2%)이 대폭 감소하였는데,

4) 「공유재산 사용(계약)기간 변경 요청(은평구사회적경제허브센터)」, 은평구청 사회적경제과-17303, 2024.10.24.

○ 변경일자 : (기존) 2024.7.1.~2024.12.31. ⇒ (변경) 2024.7.1.~2024.10.31.

○ 변경사유 :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이전(2024.10.25.)에 따른 계약기간 변경

○ 행정사항

- 은평소방서 : 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환급(반납)

- 은평구청 : 공유재산 사용 종료에 따른 사용공간 정리(~2024.10.31.)

- 이는 공공예금의 최근 3년('21~'23) 평균잔고와 시금고 이자율(2.52%)을 반영하여 추계하였으나 세출계좌 이자 감소와 함께 서울시 재무과에서 소방특별회계 세출계좌 잔고를 정기예금 보다는 자유예금 위주로 운용함에 따른 결과로 서울시 재무과와 협의하여 가급적 정기예금을 통한 이자 수입 제고가 필요해 보임.

[표] 최근 5년간('21 ~ '25) 공공예금이자수입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66,932	836,483	768,279	408,633	79,074
	세출계좌 이자 (금리 2.52%)	66,932	208,008	351,517	50,425	15,239
	기업예금(정기·자유) 이자	-	628,475	416,762	358,208	63,835
	정기예금 이자 (금리 4.15%)	-	628,475	273,161	351,401	-
	자유예금 이자 (금리 변동)	-	-	143,601	6,807	63,835

- 또한, 세출계좌 이자수입의 경우 소방특별회계 세출 모계좌의 평균 잔고 및 적용 이자율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정확한 세수 추계가 어려우나 과거 실적과 경향 분석을 통해 근사치에 가까운 세수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표] 최근 3년간('23 ~ '25) 세출계좌 이자수입 발생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이자산정일	2023			2024			2025		
	발생 계좌 연도	평균잔고/ 예치금액	이자금액	발생 계좌 연도	평균잔고/ 예치금액	이자금액	발생 계좌 연도	평균잔고/ 예치금액	이자금액
전년도. 07.01~12.31.	2022	19,538,312	298,470	2023	1,384,953	35,139	2024	274,069	6,962
당해연도. 01.01~06.30.	2022	974,341	24,550	2023	140,722	3,556	2024	81,366	2,050
당해연도. 01.01~06.30.	2023	1,136,359	28,497	2024	467,822	11,730	2025	330,581	6,227
	합 계		351,517	합 계		50,425	합 계		15,239

- 참고로 기업예금 이자는 서울시 재무과가 소방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휴자금을 「지방회계법」 제39조(세계현금의 전용)⁵⁾에 따라 연도말 일반회계로 돌려주고 남은 잔액을 정기예금(만기식, 금리 4.15%) 또는 자유예금(수시입출식, 금리변동)⁶⁾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이자분임.

[표] 최근 3년간('23 ~ '25) 정기예금 가입 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치금액	실지금이자	이자발생기간	이 율	상품구분
2025	1,900,000	39,661	2024.12.30.~2025.1.24.	4.01%	자유예금
2025		12,533	2024.12.30.~2025.1.17.	3.91%	자유예금
2025		3	2024.12.30.~2025.1.17.	3.79%	자유예금
2025	30,000,000	11,638	2025.12.16.~2025.12.31.	3.54%	자유예금
소계	31,900,000	63,835			
2024	30,000,000	351,401	2023.12.1. ~ 2024.4.12.	4.15%	정기예금
2024	6,807	6,807	2023.12.16. ~ 2024.2.16.	4.1%	자유예금
소계	30,006,807	358,208			
2023	100,000,000	273,161	2023.12.1. ~ 2023.12.31.	4.15%	정기예금
2023	5,143,601	143,601	2023.11.18. ~ 2023.12.15.	4.12%	자유예금
소 계	105,143,601	416,762			

5) 「지방회계법」 제39조(세계현금의 전용)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처리를 할 때 세계현금(歲計現金)이 부족한 경우 같은 회계연도에서만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轉用)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辨濟)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6) 서울시 재무과 자금 운용 현황 및 기준 (제공: 소방재난본부)

□ 특별회계 자금 운용 및 결정 기준

· 법적 근거 및 절차: 「지방회계법」 제39조(세계현금의 전용)에 의거하여 동일 회계연도 내 자금 전용 처리. 연중 일반회계로 전용 사용 후, 12월 중순 기타회계전입금 세목으로 세입을 최종 확보함.

· 예금 상품 선택: 세입·세출 차액(잉여금) 규모에 따라 예금 운용 여부를 결정함. 자금 유동성을 고려하여 중간 출금이 불가한 '기업정기예금' 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기업자유예금'을 차등 선택함.

□ 현행 자금 운용 방법 (재무과)

· 고액지출 사전 협의: 일반회계 10억 원, 특별회계 5억 원 이상의 고액 지출은 일정 조율 및 분산·분할 지출을 위해 지출 5일 전 사전 업무 협의를 실시하여 여유 자금을 최대한 확보함.

· 단기 자금 운용 (1개월 이내): 주말 등 단기 공백 자금은 중도해지 수수료가 없고 공공예금(2.52%)보다 금리가 높은 수시입출식 '기업MMDA(3.84%, 변동)'에 예치하여 수익성을 제고함.

· 장기 자금 운용 (1개월 이상): 월별 세입 상황과 고액 지출 일정을 고려해 1~3개월 단위의 '정기예금'에 예치함. 만기가 도래한 정기예금은 가산금리 적용을 통한 이자 극대화를 위해 자금 수요를 감안하여 최대한 적립 상태를 유지함.

- 기타이자수입은 법인신용카드 결제통장 등에서 발생한 이자로 예산 추계 시 최근 5년(최고, 최저 제외) 평균액에서 '23년도 신한은행과의 시금고 협약에 의한 적용 금리(2.52%)⁷⁾를 반영한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징수결정액은 6천 8백만원으로 예산 대비 1천 8백만원(36.1%)이 증가하였음.([표] 참조)

[표] 최근 5년간('21 ~ '25) 기타이자수입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수납액	31,009	29,000	36,325	23,444	68,659

- 다음으로, 임시적세외수입 중 불용품매각대금은 소방차량, 기타물품 등의 노후화에 따라 그 용도를 폐기한 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예산액 3억 28백만원 대비 1억 29백만원(39.3%) 감소한 1억 99백만원이 징수결정 되었음.

- 주요 감소 사유는 2025년도 매각 차량 예상 대수 65대(3억 18백만원) 대비 실제 매각 차량이 33대(1억 96백만원)로 감소됨에 따른 것으로,([표] 참조)

[표] 2025년 불용차량매각대금 세입 현황

(단위 : 대/천원)

구 분		2025년 예산추계			실제 매각 세입	
차종	내용연수	매각대수	평균매각단가	징수전망	매각대수	세입금액
계		65		318,000	33	196,617
고가차	12년	3	15,000	45,000	2	28,920
굴절차		1	12,000	12,000	1	23,150

7) 2023년 이후 공공예금 적용 금리 : 2.52% (22년말까지 1.52%에서 인상)

조명배연차		3	5,000	15,000	0	0
펌프차	10년	5	7,000	35,000	2	6,100
물탱크차		3	7,000	21,000	0	0
화학차		3	9,000	27,000	1	7,666
지휘버스	8년	1	5,000	5,000	0	0
구조버스		5	3,000	15,000	5	18,450
순찰차		1	3,000	3,000	1	1,850
행정차		20	3,000	60,000	0	0
구급차	5년	20	4,000	80,000	15	77,690
구조공작차	8년	-			1	11,700
이륜차		-			4	18,991
고무보트	7년	-			1	2,100

- 이는 예산 추계 시 차년도 불용대상 차량에 대해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정비이력, 무상양여⁸⁾ 등 다양한 변수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또한, 소방차량 특성상 신규 교체가 완료되어야만 불용 처리가 가능함에 따라 제작·납품 지연 등으로 교체 시점이 늦어질 경우 매각 시기도 함께 미뤄지는 집행상의 구조적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보임.
- 향후에는 불용 가능 차량에 대한 예측 체계를 내구연수 외에 운행지표 기반으로 보다 정교화하여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차량 고장으로 인한 출동 공백을 방지하고 현장대응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획된 일정에 신속한 차량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8) 2025년도 서울소방재난본부 해외무상양여 현황

□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8조 공적개발원조사업에 따라 개발도상국 소방안전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불용소방차 등 소방 장비를 해외도시에 지원하고 있음.

□ 25년도 해외무상양여 소방차량 총 7대(소방펌프차 4대, 소방물탱크차 1대, 특수구급차 2대)

- 위약금은 업체에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약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및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 예산액 1억 21백만원 대비 6천 9백만원(57.5%) 감소한 5천 1백만원이 징수결정 되었음.

[표] 2025년 위약금 및 지체상금 세입 세부 현황

(단위 : 천원, 일)

연번	계약건명	계약금	징수금액	계약기간	지연일	발생사유
1	클라우드기반 소방통합 누리집 재구축 용역	354,200	41,902	2024.6.19.~ 2024.12.15.	91	납품지연
2	2025년 구급장비 구매	1,108,800	3,548	2025.4.22.~ 2025.6.23.	4	납품지연
3	방수포 체험형 미니소방차 제작구매	20,593	412	2025.8.1.~ 2025.10.30.	25	납품지연
4	현장안전점검관 개인보호 측정장비 구매	82,278	5,726	2025.6.27.~ 2025.8.26.	87	납품지연
5	2025년 강북소방서 비상소화장치함 교체 공사	7,700	4	2025.4.8.~ 2025.4.15.	1	준공지연
합계		1,573,571	51,592		208	

- 이는 예년에 비해 위약금 등의 발생이 줄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상기 [표]의 지체상금 건 중 지연일수가 91일인 ‘클라우드기반 소방통합 누리집 재구축 용역 (계약기간 : ‘24.6.19.~12.15.)’ 사업은 준공(‘24.12.15.) 검사 결과 계약서 및 과업지서 내 명시된 품질기준과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아 보완 작업 과정에 91일이 지연⁹⁾된 것이며,

9) 「클라우드 기반 소방 통합 누리집 재구축 용역 사업 준공 검사 결과통보 및 사정조치 요청」(안전지원과-4358, 2025.2.28.)
 □ 부적합 사유 : 핵심기능(콘텐츠별 관리, 권한관리, 콘텐츠 마티보기 및 복구, 세부검색 기능 등) 요구사항 미구현으로 보완필요
 「대금지급 및 지연배상금 세입 계획[클라우드 기반 소방 통합 누리집 재구축 용역]」(소방행정과-7397, 2025.3.18.)
 □ 지연배상금 발생 내역
 ○ 지연배상금 : 금41,901,860원

- ‘2025년 구급장비 구매’건은 납품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정해진 납품 일자에 물품을 확보하지 못해 4일 동안 납품이 지연되어 지연배상금을 부과¹⁰⁾한 것임.
- 다음으로, ‘방수포 체험형 미니소방차 제작구매’건은 계약기간 (‘25.8.1.~10.30.) 내 납품은 이루어졌으나 검수 과정에서 외관 및 작동 상태 미비 사항이 발견되어 최종 납품에 25일의 지연일수가 발생¹¹⁾되었고,
- ‘현장안전점검관 개인보호 측정장비 구매’건은 해외에서 제조되는 열화상카메라의 핵심 부품 수급이 지체됨에 따라 87일의 지연일수가 발생¹²⁾하였으며, ‘2025년 강북소방서 비상소화장치함 교체 공사’건은 업체 측의 준공일자 착오로 인하여 준공 요청이 1일 지연¹³⁾됨에 따라 지연배상금(3,850원)을 징수함.

- 산출 : 계약금 354,200,000원 × 지체일수(91일) × 지연배상금률(0.13%)

※ 지체일수 : 91일(준공기한 다음날 ~ 준공검사 합격일)

○ 금차 지급 금액 : 금64,358,140원

- 산출 : 계약금 354,200,000원 - 선금금 247,940,000원 - 지연배상금 41,901,860원

10) 「대금 지급 및 지연배상금 세입 계획[2025년 구급장비 구매](소방행정과-17634, 2025.7.1.)

□ 지체상금 및 대금 지급 내역

○ 지연배상금 : 금3,548,160원

- 산출 : 지연 납품 1,108,800,000원 × 지체일수(4일) × 지연배상금률(0.08%)

※ 지체일수 : 4일(납품 기한 다음날 ~ 검사 합격일)

○ 금차 지급 금액 : 금1,105,251,840원(부가세 포함)

※ 산출 : 계약금(1,995,320,200원) - 선금 공제액(685,924,000원) - 1차 가산지급액(200,596,200원) - 지연배상금(3,548,160원)

11) 「대금지급 및 지연배상금 세입계획 방수포 체험형 미니소방차 제작 구매(소방행정과-32189, 2025.11.28.)

□ 지체기간 : 2025.10.31.~11.24. / 지체일수 : 25일 ※ 납품기한 다음날~검사합격일

□ 지체사유 : 미니소방차 외관 및 작동상태 미비로 보완지시(2025.11.3.)

□ 대금지급 및 지연배상금 부과 내역

○ 지연배상금(세입금액) : 금411,860원 ※ 산출근거 : 계약금액(20,593,100) × 지체일수(25일) × 지연배상금률(0.08%)

12) 「대금지급 및 지연배상금 세입계획 현장안전점검관 개인보호 측정장비(3종 82점) 구매(소방행정과-32240, 2025.11.28.)

□ 지체기간 : 2025. 8. 27. ~ 11. 21 / 지체일수 : 87일 ※ 납품기한 다음날 ~ 검사합격일

□ 지체사유 : 해외에서 제조되는 열화상카메라(FIIR K1)의 핵심 부품 수급 과정에 문제가 있어 국내 입고 지연발생

□ 대금지급 및 지연배상금 부과 내역

○ 지연배상금(세입금액) : 금5,726,570원 ※ 산출근거 : 계약금액(82,278,420)×지체일수(87일)×지연배상금률(0.08%)

- 한편, 최근 3년간 위약금 및 지체상금을 보면, 2023년 1천 9백만원, 2024년 1억 5천만원, 2025년 5천 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 생각되나 더욱 철저한 검증과 납품과정 감독을 통해 소방장비 보급 및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표] 최근 3년간('23 ~ '25) 위약금 및 지체상금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예산현액	위약금및지체상금 현황		수납률
		수납액	건수	
2025년	121,323	51,592	5건	42.5%
2024년	166,506	153,705	4건	92.3%
2023년	202,346	19,198	9건	8.7%

- 다음으로, 그외수입의 경우 예산액 3억 76백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2억 34백만원으로 예산 대비 1억 41백만원(37.7%) 감소하였음.([표] 참조)

[표] 최근 5년간('21 ~ '25) 그외수입 징수현황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별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산액(a)	299,484	527,682	415,853	563,189	376,199
징수결정액(b)	778,741	917,952	1,447,042	186,861	234,210
차액(c=b-a)	479,257	390,270	1,031,189	△376,327	△141,989
증감률(c/a*100)	160.0%	74.0%	248.0%	△66.8%	△37.7%

- 그외수입은 과오납 및 정산 환급금 등 일반 세입과목에 속하지 않는 기타잡수입으로 세입추계가 어려워 일시적 증가분을 제외한 최근 5년('19~'23) 평균 수납액을 적용하여 계상하였으

13) 「지체상금 발생에 따른 세외수입 조치 계획」(소방행정과-4246, 2025.4.24.)

□ 지체일수 : 1일(2025.4.16.일자 준공확인요청서 접수)

□ 지체상금 : 금3,850원(금삼천팔백오십원) ※ 산출근거 : 7,700,000(계약금액) × 1일(지체일수) × 0.0005(자연배상금률)

나 당해연도의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이(△1억 4,198만원)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세입 추계방법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음.

[표] 2019년~2025년 그외수입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과 세 내 용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계	234,210	186,861	1,424,654	917,952	778,741	498,580	276,654
1	조달물자 환불대금	-	-	354	6,458	415,097 (추계제외)	267,592 (추계제외)	-
2	과오납 및 정산 환급금 (자체점검 과지급 수당 등 환수액)	146,360	77,151	195,730	230,203	95,437	162,298	167,919
3	각종 감사결과 환수금 (급여, 계약금액 오류산출 등)	55,868	28,804	29,425	12,384	60,696	26,129	44,550
4	과년도 일반경비 집행잔액 및 계좌정리 세입	11,701	6,457	21,000	4,473	93,693	3,326	-
5	가지급 초과근무수당 환수 ¹⁴⁾ (판결, 화해 등)	8,224	5,049	998,812 (추계제외)	344,085 (추계제외)	-	-	15,628
6	소방학교 등 식당 외주업체 사용 공공요금	-	4,911	15,154	13,154	13,576	14,318	11,651
7	기타							
	공공조달용 유류구매카드 등 포인트	6,208	633	3,412	5,172	466	15,807	150
	그 외 불분명 잡수입 등 보험료 환급금, 전화해지 환급금 등	5,849	63,857	160,767	119,023	99,776	9,110	36,756
	2022년 서울소방 빅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 정부출연금	-	-	-	183,000	-	-	-

* 추계제외 : 예산 추계 시 일시적 증가분으로 2025년도 예산편성시 이를 제외하고 최근 5년간(2019~2023년)의 평균 수납액만을 반영하여 산출

- 다음으로,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중 과징금은 「소방시설공사
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소방 관련 법규에 따른 행정
사항을 위반¹⁵⁾시 부과되는 것으로, 예산액 1억 23백만원 대비
9천 7백만원(78.7%) 감소한 2천 6백만원이 징수결정 되었음.
([표] 참조)

14) 화해권고 종결 결정('23.12.6.) - 기존 휴일병급 수당 환수, 미지급 수당 지급

15) ※ 과징금 부과 예시: 하도급 제한 위반, 착공신고 위반, 소방시설 설계 시 화재안전기준 위반, 소방기술자 공사 현장 미배치 등

[표] 최근 5년간('21 ~ '25) 과징금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연도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과징금 예산액		33,977	40,078	42,884	42,884	123,930	37,800
징수결정액		53,820	69,300	117,420	199,301	26,351	103,962
부과건수		12건	14건	4건	23건	7건	14건

- 이는 세입예산 추계 당시 최근 3년간('22~'24)을 평균 징수액으로 편성 하였으나, 과징금 산정의 경우 업체의 영업정지 기간(일)에 따른 연간매출액의 각 구간별 범위 내 1일 과징금 금액¹⁶⁾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부과하는 산정기준에 의존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발생함.

○ 이행강제금¹⁷⁾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

16)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제1호 관련)

1. 일반기준(생략)
2. 개별기준

등급	연간 매출액	1일 과징금 금액(단위: 원)
1	1억원 이하	10,000
2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20,500
3	2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34,000
4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55,000
5	5억원 초과 ~ 7억원 이하	80,000
6	7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0,000
7	10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120,000
8	13억원 초과 ~ 16억원 이하	140,000
9	16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160,000
10	20억원 초과 ~ 25억원 이하	180,000
11	25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200,000
12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220,000
13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240,000
14	50억원 초과 ~ 70억원 이하	260,000
15	7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280,000
16	100억원 초과 ~ 150억원 이하	370,000
17	150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515,000
18	200억원 초과 ~ 300억원 이하	736,000
19	300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1,030,000
20	500억원 초과 ~ 1,000억원 이하	1,058,000
21	1,000억원 초과 ~ 5,000억원 이하	1,068,000
22	5,000억원 초과	1,100,000

반(비상구 훼손 또는 내부구조 임의 변경 등)으로 원상복구 조치명령과 함께 부과하는 간접적 강제수단으로, 예산액 1천 5백만원 대비 2천 5백만원(166.7%) 증가한 4천만원이 징수결정 되었음.

- 이는 관련 법령의 위반건수 증가(2022년 2건, 2023년 3건, 2024년 3건, 2025년 4건) 및 위반 경중에 따른 것으로 대상 업소에 대한 세심한 사전 점검과 이행지도 강화가 요구된다 하겠음.([표] 참조)

[표] 최근 5년간('21 ~ '25) 이행강제금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이행강제금 예산액		17,625	11,416	12,170	10,000	15,000	13,242
	징수결정액	0	16,000	30,000	25,000	4,0000	22,200
	부과건수	0건	2건	3건	3건	4건	2.4건

- 기타과태료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소방 관련 법령의 위반 시 부과하는 것으로, 예산액 8억 91백만원 대비 4천 8백만원(5.5%) 증가한 9억 4천만원이 징수결정 되었음.([표] 참조)

17) ※ 이행강제금 : 수인 의무의 불이행에 일정액수의 금전이 부과될 것임을 미리 통지함으로써 삼각적 압박을 주어 행정상 의무이행의 확보를 도모하는 간접적 강제수단

예)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훼손 및 내부구조 임의 변경 등으로 인한 위법 사항에 원상복구 조치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이행강제금)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0조의2제3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표] 최근 5년간('21 ~ '25) 기타과태료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기타과태료 예산액		459,235	460,156	471,613	750,137	891,736	606,575
	징수결정액	550,330	686,421	903,035	984,112	940,577	812,895
	수 납 액	508,255	655,714	830,512	903,869	872,879	754,246
	부과건수	1,135	1,193	1,261	1,252	1,179	1,204
	징수건수	1,092	1,155	1,205	1,194	1,128	1,155

- 과태료는 위법 행위에 대한 사후적 행정처분 결과로 정확한 세수 추계가 쉽지 않은 점은 있으나 최근 5년간('21~'25) 과태료 부과 건수가 크게 감소하지 않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방특별관리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위법사항 적발 시 관용 없는 처벌이 요구됨과 동시에 대시민 준법 홍보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지난연도수입은 전년도 누적된 체납액이 이월된 수입으로 매년 미수납액이 누적되면서 예산액 4천 3백만원 대비 2억 95백만원(674.6%)이 증가한 3억 39백만원이 징수결정 되었는데,**
 - 이는 예산편성이 완료된 다음연도 1월에 과태료, 체납액 등의 징수결정액을 확정함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세입예산액을 추계함에 있어 가급적 징수 가능한 체납액 위주로 산정하되 체납액 징수에 대한 보다 강력한 의지를 담아 예산액을 보다 적극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현재까지 체납액에 대한 이월사유별 미수납내역을 살펴 보면, 납세태만이 64.4%(86건, 1억 93백만원)로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으며, 폐업 또는 부도 12%(11건, 3천 5백만원), 무재산 9.4%(14건, 2천 8백만원), 행방불명 7.3%(8건, 2천 1백만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표] 참조)

[표] 지난연도수입 부과년도별 미수납내역

(단위 : 천원)

미수납사유	합계		부 과 년 도									
			2024		2023		2022		2021		2020 이전	
합 계	126	300,034	43	105,195	33	104,709	15	29,471	10	10,363	25	50,827
무 재 산	14	28,256	1	4,487	3	3,441	5	5,275	1	1,158	4	13,895
행 방 불 명	8	21,930	2	8,895	2	8,142			2	1,618	2	3,275
납 세 태 만	86	193,120	33	64,126	22	74,075	9	22,026	6	6,748	16	26,145
폐업 또는 부도	11	35,961	4	15,812	5	15,908	1	2,170			1	2,071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												
격리 또는 입원												
소 송 계 류	1	2,612			1	2,612						
자 금 압 박	5	17,624	3	11,875					1	839	1	4,910
기 타	1	531									1	531

- 이처럼 고질적 체납이 누적되면서 누계체납액을 증가시켜 결국에는 정리보류액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좀 더 적극적인 수납을 제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지방교부세 등의 소방안전교부세는 행정안전부가 특수 수요가 필요한 별도 품목(소방헬기, 소방선박, 안전체험관 등)을 지정하여 지원¹⁸⁾하는 특수수요분으로 예산액 71억 대비 2억원 증가한 73억원 징수결정 되었음.

[표] 2025년 소방안전교부세 특수수요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5년 교부 요청액	25년 확정 교부액	기정예산	예산액 (추경반영) (㉑)	징수결정액 (㉒)	차액 (㉒-㉑)
1	소방헬기 교체	5,000,000	5,200,000	5,000,000	5,200,000	5,200,000	0
2	소방선박 교체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0
3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0	200,000	0	0	200,000	200,000
합계		6,900,000	7,300,000	6,900,000	7,100,000	7,300,000	200,000

- 당초 서울소방재난본부는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특수수요 사업 지원 요청액인 69억원(헬기 50억, 선박 19억)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전년도 정부의 담배 개별소비세 재추계에 따라 감액되었던

18) 소방안전교부세 특수수요 대상사업 지원

○ 특수수요 대상사업

품목	지원 기준
소방헬기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과 협의된 시·도에 한하여 소방헬기 구입 시 3년간 기준금액(중형 300억원, 대형 500억원)내에서 실제 사업비용의 50%를 분할 지원
소방정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과 협의된 시·도에 한하여 소방정 구입 시 3년간 기준금액(150톤급 200억, 50톤급 80억) 내에서 실제 사업비용의 50%를 분할 지원
안전체험관	행정안전부와 협의된 시·도에 한하여 안전체험관 건립기준금액(대형·특성화 240억원, 중형 120억원) 내에서 실제 사업비용의 50%를 분할 지원
보행환경정비	행정안전부와 협의된 시·도에 한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용의 50%내에서 일괄 또는 분할 지원(개소당 최대 30억원)

○ 특수수요 교부 방식

: 각 시·도는 본예산 편성 시점에 행정안전부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기 제출한 [정산결과 및 연도별 지원요청액]을 기준으로 예상 금액을 반영하여 본예산을 편성하며, 이후 최종 교부결정액이 통보(12월 말~연초)되면 당해 연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차액 및 미반영분을 최종 편성·정리하는 구조임.

과거 결손분 4억원(소방헬기 2억원, 시민안전체험관 2억원)이 사후 정산으로 추가 교부되어 2025년 소방안전교부세 특수수요 지원 금액이 총 73억원(소방헬기 52억, 소방정 19억, 시민안전체험관 2억원)으로 확정¹⁹⁾되었고, 이 중 시민안전체험관 2억원을 세입 예산에 미편성하면서 결과적으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임.

- 해당 체험관 교부액은 정부의 「제2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²⁰⁾(‘23~‘27)」에 따라 서울소방이 1단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4년간(‘24~‘27년) 총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서울시(주택실, 총괄)와 도봉구(자치구)와 함께 추진 중인 ‘도봉소방학교 이전부지 복합개발사업²¹⁾’의 일

19) 「2025년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통지」(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285, 2025.1.23.)

(단위: 천원)

시·도	총 교부액 (A+B)	인건비 (A)	사업비 (B=C+D)	일반수요(C)	특수수요 지원금액(D)			
					합계	소방헬기	소방정	안전체험관
서울	43,939,496	11,431,928	32,507,568	25,207,568	7,300,000	5,200,000	1,900,000	200,000

20) 국민 안전 교육 기본계획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계획이며, 행정안전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26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21) 「도봉소방학교 이전부지 복합개발」 사업개요

- 사업부서 : 주택실(총괄), 소방재난본부, 도봉구 등
- 사업내용
 - (소방재난본부) 안전체험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동북권 안전체험관 건립, 도봉소방서 부속시설 집약 이전·신축, 직장어린이집 설치
 - (주택실) 저출생 대책 등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공급
 - (도봉구) 청소년체육관, 가족센터, 키즈카페 등 지역필요시설 설치
- 부지개요
 - 위 치 : 도봉구 방학동 708번지 (부지면적 10,883.8㎡)※ 도봉소방서 존치
 - 소유자 : 서울시(재산관리관 소방재난본부)
 - 도시계획 : 준공업지역,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청사

환으로 동북권 안전체험관 건립을 계획하였으나 공공주택 공급유형 변경 등 계획 조정으로 사업이 지연²²⁾됨에 따라 예산을 미편성하였다는 입장임.

- 다만, 소방안전교부세 특수수요의 경우 사업기간, 집행기간 등의 조건이 부여되는데 사업이 장기간 추진되지 않으면 반환 등의 조치²³⁾가 이루어지는 만큼 조속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임.

○ 다음으로, 보전수입 중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은 무주택 소방공무원의 전세융자금에 대한 중도상환액으로 예산액 43억 74백만원 대비 7억 88백만원이(18.0%) 감소한 35억 86백만원 징수결정 되었는데,

- 이는 당초 예상했던 상환 인원 및 금액의 차이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앞서 시중금리의 변동과 상환계획에 대한 사전조사를 보다 면밀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표] 참조)

22) 「도봉소방학교 이전부지 복합개발」 사업 지연사유

-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계획 조정
 - 당초부터 단독사업이 아닌 복합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청년혁신시설 사업 철회('21.12.) 이후 지역필요시설 도입('23.) 및 공공주택 확대 정책 반영('24.~'25.) 등 구조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조정이 발생하였음.
 -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재이행이 필요하게 되어, 관련절차 진행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됨.
- 중앙부처 협의 절차 진행 필요(투자심사 협의면제 재확인)
 -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24년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협의면제*를 받았으나, 이후 공공주택 규모 확대**등으로 재확인이 필요한 상황임.

* 협의면제 근거 : 국무회의 의결안건(국토부 소관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사업 포함)

**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25.3.27.) →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설 시 준공업지역 용적률 400%까지 적용 가능(기존 250%) → 공공주택 규모 확대

- 다만, 투자심사 협의면제 절차는 상시가 아닌 필요시 수시로 운영되는 구조로, 아직 행정안전부 공식 일정은 공지되지 않았으며, 최근 국토교통부 사전 수요조사 제출 완료함('26. 4. 24.).

23) 「특별교부세 교부운영 지침」(행정안전부, 2025.9.)에 교부세 반환·감액 규정에 의거 교부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비 미집행시 반환 또는 감액 조치

단, 부득이한 경우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각각 1회에 한정하여 용도변경 또는 사업기간 연장 가능

[표] 최근 3년간('23 ~ '25)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예산액	수납 금액	상환 인원	예산액 대비 수납률
2025	4,374,000	3,586,000	47명	82.0%
2024	2,295,000	3,460,000	46명	150.8%
2023	2,446,000	3,539,000	49명	144.7%

다) 정리보류 (결산서 p.25 ~ 28, p.141)

- 소방특별회계 정리보류는 12건(1천 5백만원)으로, 이 중 2건은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정리보류 등) 제2항²⁴⁾에 따라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5년 경과)가 완성되어 정리보류한 것이고, 10건은 동법 시행령 제94조(정리보류)²⁵⁾에 따라 기타(무재산, 행방불명)의 이유로 정리보류 처리한 것임.([표] 참조)

[표] '25년 정리보류액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연 번	소방서	채납 금액	최초 부과년월	결손 사유	정리보류 사유
	합 계	15,670			
1	강남	875	2019-12	행방 불명	사업자 재산조회 결과 차량 부존재, 부동산 공동소유로 압류시 실효성 없으며, 사업장 상호 및 대표자 변경, 등본상 거주지 폐문, 연락두절
2	강남	1,217	2020-01	행방 불명	재산조회 (부동산·차량) 결과 무재산이며, 사업자 등본상 거주지 폐문, 연락두절
3	동대문	1,050	2020-03	시효 완성정리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징수불가

24)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정리보류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시효완성정리를 하여야 한다

2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정리보류) ①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리보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채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채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연 번	소방서	채납 금액	최초 부과년월	결손 사유	정리보류 사유
4	동대문	812	2023-06	무재산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으로 5년 경과하여 시효소멸
5	동대문	1,750	2019-12	시효 완성정리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징수불가
6	동대문	1,354	2023-06	무재산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으로 5년 경과하여 시효소멸
7	동대문	3,092	2021-09	기타	본인사망으로 채납액 징수 불가로 정리보류 처리함
8	동대문	1,028	2020-12	무재산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으로 5년 경과하여 시효소멸
9	동대문	587	2024-09	무재산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으로 5년 경과하여 시효소멸
10	동대문	1,270	2024-01	무재산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으로 5년 경과하여 시효소멸
11	동대문	635	2024-01	무재산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으로 5년 경과하여 시효소멸
12	서대문	2,000	2019-09	무재산	사업장 폐쇄로 대표자 및 사업자 재산조회(차량,부동산) 결과 무재산

- 최근 3년간 정리보류액 현황을 살펴보면 '25년 정리보류액은 12건으로 전년('24년 7건) 대비 소폭 증가하고 있어 정리보류 전 재산조회 및 행방조사를 면밀히 수행하여 부적절한 처분을 방지하고 채납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음.([표]참조)

[표] 최근 3년간 ('23~'25년) 정리보류액 현황

(단위 : 천원, 건수)

구분	연도별	평균금액		2025		2024		2023	
		보류액	건수	보류액	건수	보류액	건수	보류액	건수
	정리보류액	22,927	10	15,670	12	20,559	7	32,554	11
	시효완성정리	10,168	4.6	2,800	2	17,550	6	10,156	6
	무재산	11,031	4.3	7,686	7	3,009	1	22,398	5
	행방불명	697	0.6	2,092	2				
	기타	1,030	0.3	3,092	1				

라) 미수납액 (결산서 p.25~28, p.145)

- 미수납액은 4억 7백만원으로 전액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표] '25년 소방특별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사유 \ 과목		계	이행강제금	지난연도수입	과태료
미수납액		407,731	40,000	300,033	67,698
		100%	9.8%	73.6%	16.6%
	무재산	28,818		28,255	563
	행방불명	21,930		21,930	
	납세태만	263,962	20,000	193,121	50,841
	폐업 또는 부도	35,961		35,961	
	자금압박	37,374	10,000	17,624	9,750
	납기미도래	0			
	소송계류	16,214	10,000	2,612	3,602
	기타(분할납부)	3,473		531	2,942

- 미수납 사유별로 보면 납세태만(64.7%), 자금압박(9.1%), 폐업 및 부도(8.8%)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납세태만 체납자의 경우 고의 체납의 경우가 많으므로 적극적인 수납 독려와 체납관리를 통해 이월액을 줄여야 할 것임.

마) 환급액 (결산서 p.25~28, p.149)

- 2025년도 환급액은 264만원으로 최근 3년간 환급액 현황을 살펴보면 연도별 차이는 보이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다음 [표]에서 보여주듯이 환급액 발생 세부사유가 대부분 행정기관의 착오에 의해 발생한 것임.

[표] 최근 3년간('23~'25) 세입결산 중 환급액 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환급액	환급사유		
				행정기관 착오	내부거래	기타
2025	1,014,527,235	1,014,106,474	2,641	2,641		
			1건	1건		
2024	1,001,009,974	1,000,667,814	1,187,171	20	1,180,000	7,151
			4건	1건	2건	1건
2023	986,444,210	986,129,215	1,845	1,845		
			2건	2건		

- 주요 환급 내역은 그외수입 1건으로 방호용장갑 조달구매 계약이 계약업체의 KFI 인증 불합격으로 해지됨에 따라 당초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계약보증금 589만원을 전액 세입처리하였으나 이후 조달청의 계약보증금 산정 방식 오류 정정 통보²⁶⁾로 차액인 264만원을 반환처리 한 것임.

[표] '25년 환급액 발생사유

세입과목	환급액(천원)	사유	상세사유												
합계	2,641														
그외수입 (기타잡수입)	2,641	행정기관 (조달청) 착오	방호용장갑 조달구매 계약이 KFI 인증 제품검사 2회 불합격으로 해지됨에 따라 조달청으로부터 계약보증금 5,886,430원을 환불받아 세입 처리하였으나, 이후 계약보증금 산정 오류에 따른 정정 통보로 환불금액이 3,245,690원으로 변경되어 차액 2,640,740원을 조달청에 반환함. ※ 예산 세입 후 환급된 것이 아닌 조달청으로부터 입금받은 계약보증금을 환급한 것임 (단위 : 원)												
			<table><tr><th>계약업체</th><th>품목 /수량</th><th>계약금액</th><th>취소일</th><th>최초 계약보증금</th><th>최종 계약보증금</th></tr><tr><td>(주)조글로벌 (대표 정구희)</td><td>방화장갑 322점</td><td>64,913,910</td><td>2025.8.19.</td><td>5,886,430</td><td>3,245,690</td></tr></table>	계약업체	품목 /수량	계약금액	취소일	최초 계약보증금	최종 계약보증금	(주)조글로벌 (대표 정구희)	방화장갑 322점	64,913,910	2025.8.19.	5,886,430	3,245,690
			계약업체	품목 /수량	계약금액	취소일	최초 계약보증금	최종 계약보증금							
(주)조글로벌 (대표 정구희)	방화장갑 322점	64,913,910	2025.8.19.	5,886,430	3,245,690										

26) 「환불 계약보증금 일부 환수 요청(0024D1141-02)」(조달청 보건의료구매과-9893, 2025.12.22.)

- 계약번호 : 0024D1141-02
- 계약보증금 환불금액 내역

납품요구번호	미종결금액	가지급 환불금액	변경 환불금액	환수금액
R25TB00494509-00호	64,913,910	5,886,430	3,245,690	2,640,740

2) 세 출 결 산

세 출 결 산 현 황 (순계규모)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보조 금반 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5	1,001,176	14,265		64 (-64)	2,989 (-2,989)		1,015,441	996,610	4,257		4,257	950	13,624 (1.3%)
2024	1,026,006	725		1,632 (-1,632)	25 (-25)		1,026,732	977,202	14,265	13,886	379	149	35,115 (3.4%)
2023	974,871	5,866	511 (-511)	-	298 (-298)	2,410	980,737	952,479	726		726	127	27,405 (2.8%)

가) 개 요

- 2025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세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9,743억 87백만원과 소방특별회계 1조 154억 41백만원(순계예산²⁷⁾)을 포함하여 총 1조 9,898억 28백만원(총계예산²⁸)으로 이 중 지출액은 총계규모로 1조 9,709억 97백만원이고 순계규모로 9,966억 1천만원임.
- 순계규모 기준 다음연도 이월액은 0.4%인 42억 57백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3%인 136억 24백만원에 해당함.

나) 집행잔액(불용액)(결산서 p.31~77)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인 136억 24백만원이며, 불용률 10% 이상 또는 집행잔액 1억원 이상 사업은 ‘소방행정과 기본경비’ 등 27건임. ([표] 참조)

27) 순계예산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계예산에서 회계간 전출입 등을 통한 재원의 중복계상된 부분을 제외한 실제적 재정규모를 말함.

28) 총계예산 :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편성 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외형적 예산규모로서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합산 총계한 규모를 말함.

[표] 불용률 10% 이상 또는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과)	사 업 명	예 산 내 역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1	소방행정과	가락119안전센터 재건축	321	200			121	37.6
2	소방행정과	소방관서 시설물 유지 보수	12,160	11,714			446	3.7
3	소방행정과	노후 소방청사 공간재구성 사업	1,218	1,074			144	11.8
4	소방행정과	업무용정수물품 및 기타 행정용품 구입	1,248	948			300	24.1
5	소방행정과	예비비	1,065				1,065	100.0
6	소방행정과	소방활동지원	29,978	29,587			391	1.3
7	소방행정과	소방공무원 노사상생 협력사업	48	42			6	12.7
8	소방행정과	소방직무능력 제고	2,367	2,210			157	6.6
9	소방행정과	기본경비(소방행정과)	25,182	22,597			2,585	10.3
10	소방행정과	인력운영비(인건비 계정)	757,320	755,195			2,125	0.3
11	소방행정과	인력운영비(소방정책사업비 계정)	22,967	21,251			1,716	7.5
12	재난대응과	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6,579	6,387			192	2.9
13	재난대응과	한강안전시스템 운영	1,892	1,110	101		681	36.0
14	재난대응과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8,942	8,538			404	4.5
15	안전지원과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9,750	9,178			572	5.9
16	안전지원과	119구급차량 및 응급의료장비 보강	2,508	2,405			103	4.1
17	안전지원과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16,344	16,189			155	0.9
18	안전지원과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5,429	4,918			511	9.4
19	안전지원과	중대재해없는 안전보건환경 조성	1,371	1,269			102	7.4
20	안전지원과	순직소방공무원 등 유가족 지원	42	34			8	19.0
21	안전지원과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운영	135	118			17	13.1
22	현장대응단	재난현장 활동 지원	204	180			24	11.4
23	자원관리과	소방통신망 보강 및 유지관리	1,749	1,577			172	9.8
24	자원관리과	기본경비	1,043	899			144	13.8
25	교육지원과	소방인재채용 및 양성	3,079	2,788			291	9.4
26	교육지원과	소방학교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840	744			96	11.4
27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기본경비	1,460	1,260			200	13.7

- 소방행정과 ‘가락119안전센터 재건축’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라 강남농수산물검사소와 합동청사로 건립하는 사업²⁹⁾으로 당해연도 예산현액 3억 21백만원(시설비 2억 76백만원, 감리비 4천 5백만원) 중 37.6%인 1억 21백만원(시설비 9천 6백만원, 감리비 2천 5백만원)을 불용하였음.

[표] 가락119안전센터 재건축 사업 중 기존 청사 철거 용역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시장 북3문 인근(가락동600)
- 사업기간 : '25. 2월 ~ 6월
- 편성예산 : 321백만원(시설비 276백만원, 감리비 45백만원)
- ※ 사업의 불확실성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에 기반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적정 소요예산을 보수적·안정적으로 반영함.
- 실제집행예산 : 200백만원(시설비 180백만원, 감리비 20백만원)
- ※ 실제 사업 발주 시점에는 과업 범위가 명확히 확정됨에 따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 실거래 가격을 반영한 '견적산출방식'을 적용함.
- 규 모 : 3/1층, 대지면적 650㎡, 연면적 791.34㎡, 석면 390.1㎡
- 사업내용 : 기존 청사 건물 및 석면 철거, 폐기물 처리, 대지 원상복구(아스콘 포장) 등
- 추진일정

해체계획서 작성 및 심의(허가)		해체감리지정		해체공사		매장유산 시굴조사		대지원상복구 (아스콘 포장)
전문기술자 작성 송파구청(허가)	⇒	송파구청	⇒	송파구청 현장점검	⇒	용역 의뢰	⇒	철거 사업 완료
'25. 2. ~ 4.		'25. 4.		'25. 5.		'25. 6.		'25. 6.

- 이와 관련해 서울소방재난본부는 기존 청사 철거를 위한 당해연도 예산 편성 시점에서 사업의 불확실성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엔

29) 가락119안전센터 재건축 사업

- 위 치 :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시장 북 3문 옆
- 사업기간 : '19.03월 ~ '24.10월 ('24.12.13. 완공)
- 사업규모 : 5/1층, 연면적 2,949.56㎡(안전센터 993.47㎡, 검사소 1,956.09㎡)
- 사 업 비 : 17,888백만원(안전센터 4,311백만원, 농수산물검사소 13,577백만원)
 - 농수산물식품공사 부지(1,138.26㎡) 무상임대 : 토지사용대차 계약서('21.12월 ~ '50.03월)
- 입주부서 : 가락119안전센터, 강남농수산물검사소

지니어링 표준품셈에 기반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반영하였고, 실제 사업 발주는 발주 시점에서 과업 범위가 명확히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실비정액가산방식’ 대신 ‘견적산출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는 설명임.

- 그러나, ‘견적산출방식’은 수의계약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기존 청사 철거 용역을 공종별로 분리³⁰⁾하여 수의계약에 의해 진행했다는 점에서 편법 집행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발주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음.

- 소방행정과 ‘업무용정수물품 및 기타 행정용품 구입’은 예산 현액 12억 48백만원 중 3억원(24.1%)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주요 사유는 자산및물품취득비 항목에서 소방대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다기능 산소 공급장치’ 구매비 3억원을 전액 불용함에 따른 것임.

- 소방재난본부는 당초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25개 소방서 상황실 및 심신안정실 12개소에 대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기능 산소 공급장치’를 구매³¹⁾하고자 하였으나,

30) 가락119안전센터 재건축에 따른 기존 청사 철거 용역 내역

연번	용역 목록	계약체결금액(원)
1	2025년 가락119안전센터 철거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49,374,000
2	2025년 가락119안전센터 구청사 해체계획서 작성 용역(건물철거 설계)	8,880,000
3	가락119안전센터 구청사 도시가스배관 이설공사 계획	17,840,000
4	가락119안전센터 구청사 석면 해체 공사	18,620,000
5	가락119안전센터 구청사(본건물) 해체 공사	53,000,000
6	가락119안전센터 구청사 매장유산 시굴조사 용역	13,400,000
7	가락119안전센터 구청사 해체공사 감리용역	20,200,000
8	가락119안전센터 구청사 해체 아스팔트 포장 공사	19,900,000

31) 「다기능 산소 공급장치 구매 계획」(소방행정과-7586, 2025.3.19.)

- 1·2차에 걸친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도입 대상 물품에 대한 전반적인 제품 사양이 미흡하여 최종 ‘부적합’ 판정을 받음에 따라 사업 추진이 중단되어 불용하였는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 용품 구매 계획시부터 현장 조사 등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음.

[표] 다기능 산소 공급장치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심의(2025.4.10.) 결과

구분	주요 검토 내용	세부 문제점 및 감점 요인
규격 및 유효성	시험챔버 용량과 구매 규격 불일치	- KTI 시험성적서는 8㎡ 소형 챔버에서 측정된 결과로 수요기관 요구 규격(가동 범위 30평) 대비 시험 환경이 너무 협소하여 유효성 입증 불가
인증 및 서류	제출 서류의 적합성 및 유효성 부족	- KTI 성적서, KC 안전확인, KC 방송통신기자재 필증 확인 결과, 구매 대상 물품(HOCS-3000)의 보완 자료가 아님 - 제출된 각종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현시점 성능 판단 불가
안전성	오존 발생으로 인한 소방대원 건강 우려	- 플라스마·UV 결합 방식으로, 산소 공급의 이점보다 오존 발생으로 인한 건강 위해성이 더 높음 - 제출된 오존 소명 자료는 2010년 과거 자료이며, 수신자 또한 사망 변경 전(에이스하이텍)으로 되어 있어 증빙 효력 상실
기술력	실내 산소 농도 제어 가능 미비	- 제안서에는 타이머를 통한 농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명시했으나, 실제로는 산소 농도 측정 센서와 연동되지 않은 '단순 타이머기능'에 불과함
수행 능력	사후관리(A/S)지속성 불확실	- 업체 측의 인력 구조 및 조직 규모를 검토한 결과, 납품 후 원활한 사후관리(A/S)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임
실적	납품 실적 증빙자료 부실	- 산소발생기 실적 자료에 납품 기관만 단순히 열거되어 있을 뿐, 객관적인 납품 규모나 수량 등의 증빙 자료가 누락되어 신뢰성 부족

- 추진배경
 - 상황실 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여 현장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 소방공무원 심리적 회복 및 스트레스 탄력성 형성과 정신건강 지원
- 추진개요
 - 사 업 명: 다기능 산소 공급장치 구매
 - 사업대상: 25개 소방서(상황실, 심신안정실)
 - 사 업 비: 300,000천원(금삼역원)
- 계약방법 : 특허제품 수의계약
 -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4호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응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 추진계획
 - 기 간: 2025. 3. 24. ~ 6. 30.
 - 구매대수: 37대(상황실 25, 심신안정실 12)

구 분	상 황 실	심신안정실
제품성능	30평 미만, 스탠드형	
제품가격	7,920,000원/대당(제품가 7,700,000원 / 설치비 22만원)	
구매대수	25대	12대
설치장소	상황실(25): 24시간 상시 근무 장소로 모두 설치	심신안정실(12): 일정 면적 이상 선정(보건복지팀 협조) * 중부, 광진, 용산, 서초, 강서,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중랑, 동작, 금천

○ 소방행정과 ‘기본경비(소방행정과)’는 예산현액 251억 82백만원 중 25억 85백만원(10.3%)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 주요 사유는 공공운영비(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청사 유지비)의 16억 86백만원, 사무관리비의 3억 5천만원, 국내여비(일반여비, 교육여비) 5억 26백만원 등에 해당함.

[표] 25회계연도 기본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통계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E=A-B-C-D)	비 율(%)		주요내용
				집행률 (B/A)	불용률 (E/A)	
합 계	25,181	22,596	2,585	89.7	10.3	
사무관리비	9,168	8,818	350	96.2	3.8	조직경비, 당직비, 급량비 등
공공운영비	9,697	8,011	1,686	82.6	17.4	전기, 가스, 상하수도 청사유지비
국내여비	4,193	3,667	526	87.5	12.5	출장여비, 교육여비 등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87	285	2	99.6	0.4	직책수행, 기관운영경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99	291	8	97.3	2.7	공상위로금, 사기진작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00	995	5	99.5	0.5	조직운영 소요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537	529	8	98.4	1.6	직위별 직무수행경비

- 이 중 공공운영비는 전기·가스·상하수도 등 청사 운영에 필수적인 고정경비에 해당하여 예산 부족 시 기관 운영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예산 추계 당시 직전 1년간 실회집행액에 당해연도 6월 소비자물가승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것이나,

- 최근 3년간 공공운영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실집행 지출액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재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표] 최근 3년간('25~'23) 공공운영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	2024	2023
예산현액	9,697	9,314	8,661
지 출 액	8,011	8,340	8,472
집행잔액	1,686	973	189
집행률(%)	82.6%	89.5%	97.8%

- 재난대응과 ‘한강안전시스템 운영’은 예산현액 18억 92백만원 중 6억 81백만원(36%)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표] 2025회계연도 한강안전시스템 예산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연 번	통계목	예 산 내 역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	사 유
	총 계	1,892	1,110	20.4	681	36	
1	공공 운영비	1,193	1,110	93	83	7	전화, 전기, 인터넷 요금 등 납부 및 유지관리 용역 낙찰차액
2	시설비	699	-	-	598	85.6	한강교량 방범 CCTV 영상감시 관제시스템 구축(월드컵, 올림픽,구리암사대교)사업 관련 1. 물품구매 예산(441백만원) - 2024년 명시이월 된 예산으로 2025년 불용처리 2. 물품구매 선금잔액 (157백만원) - 2024년 사고이월 된 예산으로 2025년 불용처리 3. 정보통신공사 예산(101백만원) - 2024년 명시이월 된 예산으로 2025년 사고이월

- 이는 공공운영비에서 전화, 전기, 인터넷요금 납부 및 유지관
리 용역 집행 후 8,300만원의 낙찰차액과 시설비(6억 99백만

원) 중 ‘한강교량 방법 CCTV 영상감시 관제시스템 구축(월드컵·올림픽·구리암사대교)³²⁾ 관련 우선협상 2순위 업체의 물품구매계약 소송에서 법원의 계약 무효 판결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해짐에 따라 물품구매비 5억 98백만원 전액을 불용처리함에 따른 것임.

[표] 월드컵·올림픽·구리암사대교 CCTV 신규 설치 추진 경과



32) 한강교량 방법 CCTV 영상감시 관제시스템 구축(월드컵·올림픽·구리암사대교)

- 위 치 : 월드컵대교, 올림픽대교, 구리암사대교
- 사업기간 : (변경 전) '24. 6월 ~ '24. 11월 ⇒ (변경 후) '26. 10월 ~ '27. 3월
⇒ 변경사유 : 우선협상 2순위 업체의 물품구매계약 소송 제기에 따른 사업 중단
- 소요예산 : 26억원(특별교부세)
[계약금] 21.4억원(물품구매 14.7억원 / 정보통신공사 6.7억원)
- 규모(길이) : 월드컵대교(1,980m), 올림픽대교(1,470m), 구리암사대교(1,133m)
- 기간변경

구 분	입찰공고	계약체결	공사착공
최초		'24. 6.	'24. 6.~'24. 11.(5개월)
변경1	'24. 4.	(물품구매, 정보통신공사)	공사중단(소송 진행)
변경2	(물품구매,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26. 10.	'26. 10. ~ '27. 3.(5개월)
(예정)		(물품구매)	

- 구체적인 분쟁 경위를 살펴보면, 제안서 평가 결과 2순위 업체 (비엔에스테크)가 낙찰업체(한국정보기술(주))의 입찰자격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용(2024.8.20.)³³⁾함.
- 이후 진행된 본안 소송에서 법원은 2025.11.20.자로 원고(2순위 업체) 승소 판결³⁴⁾을 내렸으며 서울시에서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판결이 최종 확정(2025.12.5.)되어 동 사업이 중단된 것임.
- 법원 판결에 따르면, 낙찰업체가 입찰 당시 제출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와 관련 없는 타 업체(한화비전(주)) 제품을 제안서에 포함시켜 평가를 받은 후 기술협상 과정에서 다시 자사 제품

3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결정문(2024.8.20.)

- 사건번호 : 2024카합20950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
- 채권자 : 주식회사 비엔에스테크
- 채무자 : 서울특별시
- 주 문
- 1. 채무자가 2024. 4. 24.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4-1191호로 공고한 ‘2024년 한강 교량 방범 CCTV 영상감시 관제시스템 구축(월드컵, 올림픽, 구리암사대교)’ 입찰과 관련하여, 2024. 6. 28. 채무자와 한국정보기술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
- 2. 채무자는 제1항 기재 계약의 이행을 중지하고 이를 속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제1항 기재 입찰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 4.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5. 소송비용 중 10%는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3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 판결(2025.11.20.)

- 사건번호 : 2025가합9145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확인 등 청구의 소
- 원고 : 주식회사 비엔에스테크
- 피고 : 서울특별시
- 피고보조참가인 : 한국정보기술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25.9.11.
- 판결선고 : 2025.11.20.
- 주 문
- 1. 피고가 ‘2024년 한강교량 방범 CCTV 영상감시 관제시스템 구축(월드컵, 올림픽, 구리암사대교)’ 입찰과 관련하여 2024.5.23. 피고보조참가인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행위 및 2024.6.28. 피고보조참가인과 체결한 물품계약은 각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가 위 입찰과 관련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으로 변경한 점 등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위반 및 입찰 절차의 공정성 훼손으로 판단함.

[표] 2024년 당시 한강교량 방범CCTV 영상감시 관제시스템 구축(월드컵, 올림픽, 구리암사대교) 물품입찰공고

2024년 한강교량 방범CCTV 영상감시 관제시스템 구축(월드컵, 올림픽, 구리암사대교)
물품입찰공고(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4-1191호)

(중간 생략)

3. 입찰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 제8항에 의거해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영상감시장치, 세부품명번호 4617162201)를 소지하고, 당해 품목을 직접 생산·공급할 수 있는 업체

(이하 생략)



[그림] 제안평가 당시 입찰업체(한국정보기술) 제안서 카메라 물품

-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기존 1순위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2순위 업체와 즉각 기술협상을 재개하였으나 기존 업체에 기지급된 선금 환수³⁵⁾ 및 협상 일정 조율 등으로 연내 추진이 불가해지면서 물품구매비(5억 98백만원)를 전액 불용하고 이와 연계되어 중단되었던 정보통신공사비(1억 1백만원)는 사고이월하게 된 것임.

35) 기존 1순위 물품구매업체 선금 환수 현황(주 사업자 : 한국정보기술(주), 부 사업자 : (주)에스디시스템)

(단위 : 원)

- 참고로, 본 사업은 이러한 문제로 인해 2024년 사업이 중단되면서 6억 99백만원(명시이월 5억 41백만원, 사고이월 1억 57백만원)이 당해연도로 이월³⁶⁾됨에 따라 연례적인 이월이 발생함.
 - 이처럼 입찰 심사 과정에서 응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류의 진위 여부를 제대로 검증 또는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행정력 낭비와 예산의 연례적 이월 등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는 바,
 - 향후 입찰 사업 추진 시 입찰 참가 자격 및 입찰 서류에 대한 면밀하고도 정확한 검증절차가 요구된다 하겠음.
- 재난대응과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는 예산현액 89억 42백만원 중 사무관리비 112만원, 공공운영비 814만원, 시설비 3억 95백만원 등 총 4억 4백만원(4.5%)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표] 참조)

구 분	선금 지급액	1차 반환액	2차 반환액	3차 반환액	이자상당액
일 자	'24.07.08	'24.12.04 (한국정보기술)	'26.01.23 (한국정보기술)	'26.02.04	'26.02.04 기준
		'24.12.06 (에스디시스템)	'26.01.26 (에스디시스템)		
한국정보기술	925,566,270	143,819,150	404,909,120	376,838,000	61,139,000
에스디시스템	102,840,690	13,369,300	40,000,000	49,471,390	6,966,250
합 계	1,028,406,960	157,188,450	444,909,120	426,309,390	68,105,250

36) 2024회계연도 예산 이월 내역

(단위 : 원)

계약구분	이월요구액(A-B)	계약(지급)금액(A)	집행금액(B)	집행률(%) (B/A)	비고 (잔액이월)
물품구매	440,745,840	1,469,152,800	1,028,406,960(선금 지급)	70	명시이월
물품구매(선금)	157,188,458	1,028,406,960	871,218,502	84.7	사고이월
정보통신공사	100,654,780	670,862,000	570,207,220	85	명시이월
합계	698,589,078	3,168,421,760	2,469,832,682	74.7	

[표] 2025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집행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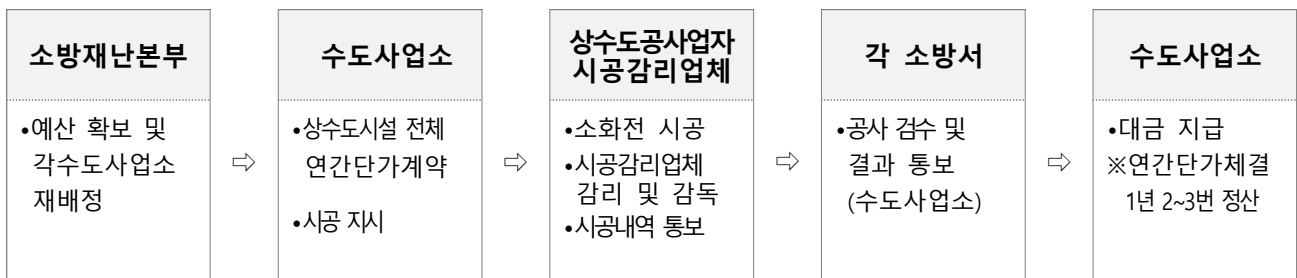
(단위:천원)

연번	사업명	통계목	예 산 내 역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사 유
총 계			8,941,620	8,537,741	95.5	403,876	4.5	
1	소방용수 시설 설치 및 보수	사무관리비	120,000	118,887	99.1	1,112	0.9	적재비품 구입 집행잔액
2		공공운영비	121,810	113,667	93.3	8,141	6.7	소방용수시설 손해보험 가입 및 IoT 소화전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에 따른 집행잔액
3		시설비	8,699,810	8,305,187	95.5	394,623	4.5	소방용수시설 및 소화전 비상 소화장치 설치 및 보수에 사용 되는 예산으로 소방분(14억 3 4백만원)에서 사용잔액(59백만 원)과 수도사업소 재배정분(72 억 65백만원)에서 잔액(3억 3 6백만원) 발생

- 이 중 시설비는 소방용수시설 및 소화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소방 자체 정비분(14억 34백만원) 일부와 관내 수도사업소 8곳(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수도자재 관리센터) 및 수도자재 관리센터(자재공급)로 재배정(25년도 72억 65백만원)하는 구조³⁷⁾임.

- 다만, 일부 수도사업소의 경우 본연의 업무인 상수도 노후밸브 정비 사업에 시간을 투자하면서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공

37) 소방용수시설 재배정에 따른 개보수 절차



사가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 등으로 인해 수도사업소 재배정분
에서 3억 36백만원이 불용됨.([표] 참조)

[표] 최근 3년간 수도사업소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실적

(단위 : 건)

	'25년						'24년						'23년					
	설치			보수			설치			보수			설치			보수		
	계획	실적	비고	계획	실적	비고	계획	실적	비고	계획	실적	비고	계획	실적	비고	계획	실적	비고
합계	15	39	▲22	1,269	1,581	▼312	15	11	▼4	1,220	1,088	▼162	12	21	▲9	886	786	▼100
중부수도사업소	1	5	▲4	409	314	▼95	3	1	▼2	421	136	▼285	2	7	▲5	256	126	▼130
서부수도사업소	0	5	▲5	119	172	▲53	4	3	▼1	151	65	▼86	3	3	0	112	91	▼21
동부수도사업소	5	15	▲10	91	368	▲277	3	3		142	240	▲98	1	7	▲6	93	152	▲59
북부수도사업소	4	2	▼2	79	112	▲33	4	0	▼4	99	102	▲3	1	1	0	81	91	▲10
강서수도사업소	1	4	▲3	107	129	▲22	0	0		119	174	▲55	0	1	▲1	70	83	▲13
남부수도사업소	2	5	▲3	147	288	▲141	0	0		76	178	▲102	0	1	▲1	87	73	▼14
강남수도사업소	2	3	▲1	174	129	▼45	0	1	▲1	116	121	5	4	0	▼4	121	111	▼10
강동수도사업소	0	0		143	69	▼74	1	3	▲2	96	42	▼54	1	1	0	66	59	▼7

- 소방용수시설의 경우 화재취약지역 등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서 화재 진압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인바 실적 중심의 성과관리 강화 등 수도사업소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음.
- 안전지원과 ‘소방공무원 건강관리’는 예산현액 54억 29백만원 중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에서 3억 86백만원, 119안심협력병원 의료비 및 심신건강의료비 지원등에서 1억 19백만원, 기타 사무관리비·자산취득비에서 600만원으로 총 5억 11백만원(9.4%)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표] 참조)

[표]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25년도 결산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내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3개 과목	합 계	5,429,284	85,892,890	119,339,393
사무관리비	소방공무원 PTSD 예방 등	40,320	40,320	0
	(국고보조사업)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688,794 (국비) 294,397	687,700	1,094
	찾아가는 한방의료서비스 운영	213,750	213,330	420
	심신안정실 물품 유지보수	14,500	14,500	0
	심신안정실 물품 임대료 지급	177,120	172,431	4,688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정기, 수시, 정밀)	4,089,800	3,703,437	385,899
	특수건강진단 업무협약 관련 물품구매		3,464	
공공운영비	119안심협력병원 의료비 지원	170,000	76,051,560	93,948,440
	소방공무원 심신건강의료비 지원 등	30,000	5,001,150	24,998,850
자산 및 물품취득비	추나베드(6대) 구매	5,000	4,998	2

- 먼저,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건강진단’과 대형화재 발생 및 정신질환 위험 등에 노출되는 대원에 대한 ‘수시건강진단’ 그리고, 검진 이상소견자(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대사증후군)를 대상으로 하는 ‘정밀건강진단’에 해당함.([표] 참조)

[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분류(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검진	특수건강진단		
	정기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정밀건강진단
기간	’25년 3월 ~ 10월 (예약 2.28. ~ 3. 9.)	연중실시	연중실시
대상	7,436명 (2025.1.1.기준)	대형화재 발생, 정신질환 위험 등	검진 이상소견자
방법	- 협약 체결된 검진기관 중 직원들이 희망하는 곳 선택 검진 - 업무 중 건강장애 증상 및 유해인자 노출 우려시 수시건강진단 활성화 - 대사증후군(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개선을 위한 정밀건강진단 활성화		

- 수시·정밀건강진단에 필요한 검진인력비 및 시약비 상승 등 검진기관의 단가 현실화 요구에 따라 '25년부터 기존 1인당 50만원(정기진단 45만원, 수시·정밀진단 5만원 한도 내)에서 1인당 55만원(정기진단 45만원, 수시·정밀진단 10만원 한도 내)으로 인상³⁸⁾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 정기건강진단 검진인원 증가 및 '고막운동성 정밀검사³⁹⁾' 추가 실시로 정밀건강진단은 전수가 대폭 증가한 반면, 수시건강진단은 일부 감소하여 전체 집행액은 소폭 상승하였고 최종 3억 85백 만원이 불용됨.

[표] 최근 3년간 특수건강진단 운영 실적

(단위 : 명,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정기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정밀건강진단	
			검진인원	집행액	검진인원	집행액	검진인원	집행액
2025년	4,089,800	3,700,437	7,673	3,453,050	1,205	198,087	1,358	49,300
2024년	3,718,000	3,643,368	7,613	3,425,850	1,358	214,324	46	3,194
2023년	3,783,500	3,631,237	7,549	3,397,050	2,325	231,970	39	2,217

38) 특수건강진단 1인당 검진 지원 단가 인상(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기존(2024년 이전)	변경(2025년 이후)
1인당 500,000원 (정기진단 45만원, 수시·정밀진단 5만원 한도 내)	1인당 550,000원 (정기진단 45만원, 수시·정밀진단 10만원 한도 내)

○ 단가 인상 사유

- 검진기관에서 검진인력비, 시약비, 장비 유지비, 시설관리비 등 제반 원가 상승에 따라 수시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 단가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정기건강진단을 제외한 수시건강진단과 정밀건강진단은 필요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함)

39) 고막운동성 정밀검사

□ 순음청력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될 경우, 즉시 고막운동성 검사를 시행하여 난청 등 청력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후관리로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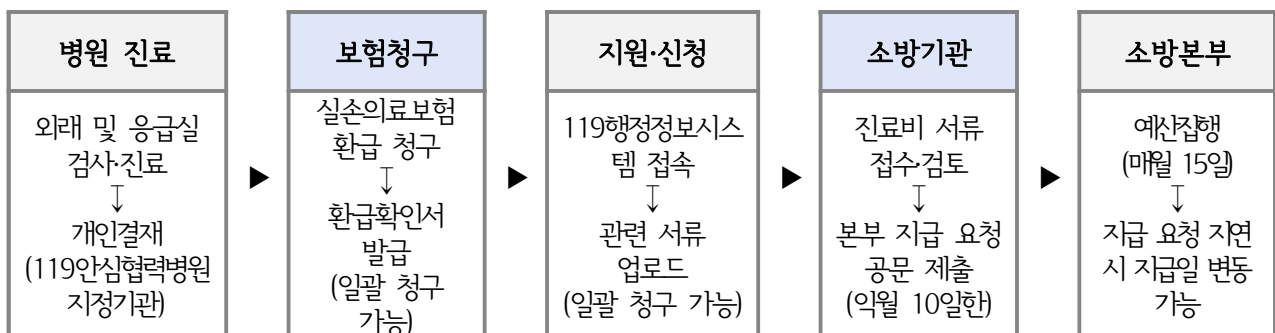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별표 2]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 (제18조 제5항 관련)

나) 정기건강진단

유해인자	검사항목	비 고
소음	순음청력검사(0.5-8.0 kHz), 고막운동성검사*	*청력역치 0.5-2 kHz에서 30 dB 이상 또는 3-8 kHz에서 40 dB 이상인 경우 실시

- 본 사업은 소방공무원의 직무 수행 능력 유지, 직업성 질환 예방, 조기 진단과 예방, 그리고 직장 내 건강관리 문화 형성에 중요하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누락 되는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상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
- 다음으로, 공공운영비는 119안심협력병원 의료비(1억 7천만원) 및 심신건강의료비 지원(3천만원)에 해당하며 2024년부터 실손의료보험과의 이중 중복 지급을 방지하고자 보험환급액이 차감된 본인 부담금 중 1인당 1일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⁴⁰⁾
- 여기서, 119안심협력병원 의료비와 심신건강의료비의 당해연도 예산 2억원 중 약 8,1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19백만원을 불용하였는데,
- 이는 중복 지급 방지 제도 시행 초기 단계로서 실제 수요 예측과 집행 간의 괴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는 지원 대상자에 대한 현황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간 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하겠음.

40) 119안심협력병원 의료비 청구 및 지급 절차(『2025년 소방공무원 건강검진 운영 계획(안전지원과-4349, 2025.2.27.)』)



※ 시스템 환급 금액 오입력·실비 미청구 등의 경우에는 반려처리하고 있음.

[표] 최근 3년간 119안심협력병원 의료비 및 심신건강의료비 이용 건수 및 지원현황
(단위 : 건, 천원)

연 도	예산액	이용건수	총 결제금액	보험 환급금액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1일 40만원 한도 지원)	불용액 (예산액-지원금액)
2025년	200,000	1,634	235,046	86,030	81,053	118,947
2024년	200,000	1,210	106,990	47,319	55,428	144,572
2023년	286,800	3,275	230,363	-	230,363	56,437

○ 안전지원과 ‘순직소방공무원 등 유가족 지원’은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에 따라 순직소방공무원 추모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유족 대상의 복지(자녀 장학금, 유족 건강검진, 유족 위로금 등)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4,200만원 중 800만원(19%)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주요 잔액은 행사 차출 지급경비 등에 사용되는 사무관리비 396만원, 순직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 400만원에 해당함.

[표] 25년도 순직소방공무원 유가족 등 예산 사용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E=A-B-C-D)	비 율(%)		주요내용
				집행률(B/A)	불용률(E/A)	
계	41,900	33,940	7,960	81	19	
사무관리비	6,900	2,940	3,960	43	57	행사 차출 지급 경비 등
행사운영비	13,000	13,000	0	100	0	장기 추모식 현충일 등 참배식 등
장학금 및 학자금	12,000	8,000	4,000	67	33	(우함직무)순직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
기타보상금	10,000	10,000	0	100	0	순직소방공무원 유가족 위로금

- 사무관리비 396만원의 불용사유는 행사차출 지급경비⁴¹⁾로써

4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별표 7의1] 행사 차출 지급 경비

① 경비성격 : 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축제를 위해 공무원이 별도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지급하는 경비(행사 차출 경비)

② 기준액 : 반일(4시간 이하) 근무시 6만원,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1일 상한액(12만원) 범위 내에

신년 소방충훈탑 참배 행사 일정 조정(당초 1월 1일 → 1월 2일 평일 진행) 및 합동안장식 추진계획 변경(23위 전원 개최 → 6위 대전현충원, 잔여 대상자 2026년 서울현충원 개최 조정)⁴²⁾ 등에 따라 휴일 행사 차출 인원이 축소됨에 따른 것임.

- 다음으로, 순직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 400만원 불용사유는 당초 대학생 3명을 지원 대상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당해연도에 대상자 1명이 군입영에 따른 휴학으로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학생 2명(인당 400만원)을 대상으로 800만원의 장학금만 지급되었기 때문임.

[표] 최근 2년간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미지급) 현황

(단위 : 명)

년 도 별	지급대상	지급인원	미지급인원		
			휴학	퇴학(자퇴)	기타
2025 (연1회 지급)	3	2 (8,000천원)	1(군입대)		
2024 (연1회 지급)	6	3 (10,000천원)	3		

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반일 기준(4시간)	4시간 초과시
6만원	일 상한액 12만원 이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시간외 근무수당·관리업무수당 지급 및 대체 휴무 부여(8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와 병행 불가

※ 국가 정책적 사무를 위해 지방공무원이 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 적용

③ 지급경비는 사무관리비(201-01)로 편성

42) 2025년 순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추진 경과

○ 「순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추진계획」(안전지원과-7032, 2025.4.1.)

- 국립묘지 미안장 순직 소방공무원 54명(위험직무 16명, 일반 38명) 유가족 대상으로 국립묘지 안장 수요조사 결과 23명 확인

○ 「순직 소방공무원 국립대전현충원 합동안장식 계획」(안전지원과-17862, 2025.8.19.)

- 23위 중 6위 국립대전현충원(소방공무원 묘역) 합동안장 희망에 따라 25.8.26. 합동안장 진행

- 그 외 17위 유가족들은 국립서울현충원 안장 신청 희망에 따라 차후 추진

- 자원관리과 ‘소방통신망 보강 및 유지관리’는 예산현액 17억 49백만원 중 1억 72백만원(9.8%)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표] 2025년도 소방통신망 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현액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사유
소방통신망 보강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187,500	187,500	138,044	49,456	- 소방관서 통신장비 소모품 및 휴대용 무전기 배터리 구매 낙찰차액 - 소방무선국 신규허가건 저조로 미집행 수수료 잔액
	공공운영비	524,000	524,000	519,237	4,763	현장업무용, 지휘보고용, 구급단말기 휴대전화 사용요금, 무선중계소 전기요금 차액 발생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37,470	1,037,470	919,883	117,587	상황실 상황판 노후장비 및 소방서 다중녹음장비 교체 등 낙찰차액

- 집행잔액을 비목별로 살펴보면, 사무관리비(통신장비 소모품·배터리 구매 낙찰차액, 소방무선국 신규 허가 및 검사 미집행 수수료) 4천 9백만원, 공공운영비(단말기 요금, 무선중계소 전기요금) 5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상황실 상황판 노후장비 및 다중녹음장비 교체 낙찰차액) 1억 18백만원임.
- 소방은 소방무선국⁴³⁾ 신규 허가 및 검사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⁴⁴⁾을 통해 신규검사(무전기 구매와 차량 교체 등 검사), 변경검사(무선국 이동 등 변동시 받아야 하는 검사), 정기검사(신규 검사 후 5년 이내 받는 검사)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43) 소방무선국이란 「전파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무선국으로 소방업무 수행을 위해 설치된 무선설비와 이를 운영하는 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는 소방지휘·출동·재난현장 통신을 위한 기지국, 중계국, 차량국 및 이동국 등을 포함한다.

4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전파법」 제66조(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따라 전파의 효율적 관리 및 방송·통신·전파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기관

- 현재 소방의 무선국 대상은 1,028국(고정국 124, 차량국 904)으로 무전기 구매 및 차량 교체와 이동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연도별 대상 건수가 비정기적으로 발생함.

[표]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무선국 운영 현황

(단위 : 국)

합 계	고정국		차량국	
	UHF*	VHF**	UHF	VHF
1,028	102	22	895	9

* UHF(극초단파) : 파장이 짧고 직진성이 강해 창문이나 구조물 틈새를 잘 투과함. 전파 도달 거리는 짧으나 장애물 통과 능력이 우수하여 도심지, 대형 빌딩 내부, 지하 공간 등 실내 및 대원 간 휴대용 무전기 교신에 주로 사용됨.

** VHF(초단파) : 파장이 길어 장애물을 만나도 휘어져 나아가는 회절성이 우수함. 빌딩 벽면 투과력은 낮으나 전파 감쇄가 적어 산악 지대, 외곽 농어촌, 해상 등 탁 트인 야외나 넓은 반경을 커버하는 차량용 무전기(차량국) 통신에 주로 사용됨.

- 최근 3년간 무선국 검사 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검사 건수가 감소하여 불용액이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예산 추계 시 최근의 실적 추이를 보다 면밀하게 살피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

[표] 최근 3년간 무선국 검사 실적

(단위 : 천원)

합계	예산현액	신규, 변경 정기검사 대상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2023년	57,001	392국	39,211	17,790	68.79%
2024년	57,001	255국	23,961	33,040	42.04%
2025년	57,001	107국	15,241	41,760	18.89%

다) 예산이용(결산서 p.81) : 해당없음

라) 예산전용(결산서 p.82)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⁴⁵⁾에 의해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인건비 보수 부족분 및 재난현장 민간자원활용 예산 확보를 위해([표] 참조) 4건에 총 29억 89백 만원을 충당하여 사용하였음.

[표] 2025회계연도 예산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연 번	부서명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합 계				1,366,311	2,989	2,989			
1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행정운영 경비	인련운영비 (안전비계정)	인련운영비 (안전비계정)	304-01 연금부담금	138,813	2,003		'25.12.17.	법령 개정 등에 의한 수당 증가로 인한 부족 예산 전용	
					101-01 보수	594,694		2,003			
2					304-02 국민건강보 험금	23,812	913		'25.12.17.		
					101-01 보수	594,694		913			
3			인련운영비 (소방정 책사업비 계정)	인련운영비 (소방정 책사업비 계정)	101-03 공무직(무 기계약)근 로자보수	10,440	63		'25.12.17.		의원 면직 및 중도 퇴직 정산분 발생에 따른 공무직 보험료 부담금 부족으로 인한 예산 전용
					304-04 공무직(무기 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 금 등	1,741		63			

45)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4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재난대응 기반강화	황금시간 중심의 재난대응 기반 강화(소 방정책사 업비 계정)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ICTC)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103	10	'25.05.07.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예산의 조기 소진에 따른 재난현장의 신속 대응을 위한 민간자원 활용 예산 확보 필요
				재난현장 활동 지원	302-02 민간인재해 및복구활동 보상금	10			

○ 예산 전용의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 ‘인력운영비(인건비계정)’의 경우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개정(2025.1.3. 개정)되어 수당 부족분(12월분)이 29억 3백만원이 발생함에 따라 연금부담금(20억 3백만원) 및 국민건강보험금(9억 13백만원) 예산에서 총 29억 16백만원을 전용함.

- 관련 규정들의 개정에 따라 예측치 못한 수당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부득이 전용한 점은 인정되나, 연금부담금 1,338억 중 20억 3백만원과 국민건강보험금 238억 중 9억 13백만원을 융통해서 사용하였다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수요예측을 상당부분 과다하게 예측했음을 보여준다 할 것인바, 이들에 대한 예산편성이 보다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재난현장 활동 지원’은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⁴⁶⁾에 따라 화재 등의 재난 상황에

46)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물적 자원에 대한 보상) ① 시장은 민간의 재난대응활동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단, 관계인 등이 소유한 소방시설 및 재난대응시설의 사용에 따른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은 민간자원을 제공한 민간인의 청구에 의하되,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

동원된 민간의 인적·물적 자원 손실을 지원하는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예산이 부족하여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운영’ 사업의 공공운영비에서 1,000만원을 전용한 것임.

- 이는 ‘25년도 상반기 중 굴착기 등 민간 중장비 동원이 필요한 재난이 다수 발생([표] 참조)하여 보상금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향후 발생할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던 것으로 파악되는 바, 향후에는 재난발생 추이 등을 보다 면밀히 살펴 보다 여유있는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하겠음.

[표] 2025년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지원 내역

연번	발생일자	화 재	사용 장비	비 용 (천원)	요청 주체(소방/ 구청)
1	12.29.	서초구 비닐하우스 화재	소형 굴착기 1대	500	소방
2	12.30.	강서구 고물상 화재	미니 굴착기 1대	660	소방
3	1.5.	종로구 기계공구상사 화재	소형 굴착기 3대	2,310	소방
4	1.10.	중랑구 차량정비센터 화재	소형 굴착기 1대	550	소방
5	1.20.	종로구 근린생활시설 화재	미니 굴착기 2대	880	소방
6	1.25.	중구 열쇠만물상 화재	굴착기 2대(대형1, 소형1)	1,760	소방
7	3.6.	송파구 가건물 화재	소형 굴착기 1대	660	소방
8	1.7.	양천구 신목로5길 23 화재	소화기 활용	110	구청
9	4.12.	은평구 재활용센터 화재	굴착기 3대(대형2, 소형1)	1,900	소방
10	5.1.	노원구 창동교차로 교통사고	소형 굴착기 1대	550	소방
11	5.28.	중구 재개발구역 화재	굴착기 3대(중형2, 소형1)	4,180	소방
12	6.19.	강서구 자원순환시설 화재	중형 굴착기 1대	770	소방
13	6.4.	성동구 오토바이 화재	소화기 활용	40	구청
14	6.22.	성북구 장위동 단독주택 화재	소형 굴착기 1대	110	소방
15	6.30.	성북구 송석정 화재	중형 굴착기 1대	550	소방
16	11.22.	중랑구 재활용 작업장 화재	중형 굴착기 1대	880	소방
계				16,410	

고 현장상황 및 재난대응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6조(인적자원에 대한 보상) 시장은 민간이 재난대응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현장지휘관의 요청에 의한 지원활동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보상하거나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마) 예산이체(결산서 p.83) : 해당없음

바) 예산변경(결산서 p.84)

- 예산의 변경사용은 동일한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융통하여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기본경비’ 등 총 3건에 총 6,400만원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음.([표] 참조)

[표] 2025회계연도 예산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연번	과 목			변경금액		승인일자	사 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합 계 (3건)				64	64		
1	재난대응과	기본경비	국내여비	54		'25.03.19.	탄핵심판 선고 관련 도심집회 등 인파 밀집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동원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조직업무추진 급량비로의 예산변경을 통해 급식비 지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54		
2	예방과	예방업무 추진 향상	기타보상금	1		'25.06.12.	편성된 예산의 조기 소진에 따른 하반기 신고포상제 운영을 위한 예산변경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기타보상금		1		
3	현장대응단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사무관리비	9		'25.11.14.	기 편성된 예산의 조기 소진에 따른 소방안전지도 단말기 통신료 납부를 위한 예산변경
		소방안전지도 운영	공공운영비		9		

- 먼저, 재난대응과 ‘기본경비’는 국내여비 통계목에서 사무관리비 통계목으로 5,400만원 변경하여 사용했는데,

- 이는 대통령 탄핵 시국으로 인해 대규모 도심집회 등이 발생함에 따라 종로, 중부, 용산, 영등포 등 주요 4개 지역을 중심으로 소방력이 집중 동원되면서 현장 대원들의 급식비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사무관리비에 융통한 것으로 부득이함이 인정된다 하겠음.

○ 다음으로,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사업은 소방시설의 폐쇄·차단·잠금 등에 대한 불법행위⁴⁷⁾ 신고 포상금 예산(50만원)이 상반기에 조기 소진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백만원을 변경 사용한 것임.

- 해당 포상금은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5만원 한도로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소방용품을 지급하는 것으로,⁴⁸⁾
-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신고 포상제도의 당초 취지를 제고할

4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3.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48)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제7조(포상금 등 지급 기준) ① 포상금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최초 신고 시: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5만원

2.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신고 시: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 경보형감지기)

② 같은 사람(동일한 주소지 포함)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등의 금액은 월간 20만원,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같은 장소의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가장 먼저 접수한 사람을 최초 신고자로 본다.

④ 2명 이상이 하나의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대표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한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를 통해 신고 포상금 예산 편성을 지금보다 크게 증가해야 할 것임.

[표] 최근 5년간 신고포상제 운영 실적('25.6. 기준)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포상건수(건)	29	5	1	4	10	9
편성액(천원)	8,000	2,500	2,500	1,250	1,250	500
집행액(천원)	1,450	250	50	200	500	450

- ‘소방안전지도 운영’ 사업은 재난현장에서 각종 정보를 소방대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신속한 현장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시스템 접속에 필요한 단말기(301대) 통신료 부족분(2개월분, 11월~12월) 9백만원을 변경 사용한 것임.

- 통신료 부족의 원인을 살펴보면, 예산 편성 시 전년도 실제 집행액(70,978천원)을 기준으로 단가(1대당 2만원)를 산정하였으나 전년도 통신사 계약조건에 따른 신규약정 할인(2개월분 일시 할인)이 반영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오류가 있었고 이로 인해 2025년 10월 기준 기 편성한 예산의 대부분을 소진하여 결과적으로 11월과 12월분의 통신요금이 부족하게 된 것으로 예산 편성시 단가산정에 세심한 주의가 당부됨.([표] 참조)

[표] 소방안전지도 단말기 통신료 예산 사용 현황('25.10. 기준)

(단위 : 대, 천원)

연도	단말기 대수	월 기준 단가	편성액	집행액	잔액	비고
2024년 (1월~12월)	301대	23	83,076	70,978	12,098	2024년 통신사 신규약정 계약으로 2개월분 통신료를 일시적으로 할인받아 집행잔액 발생
2025년 (1월~10월)	301대	20	72,240	66,964	5,276	2024년 집행액 기준으로 단가 산정

사) 예비비 사용(결산서 p.87) : 해당없음

아) 차년도 사고이월⁴⁹⁾(결산서 p.163~167)

- 2025회계연도 사고이월은 '거여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등 4개 사업, 6건으로 예산현액 86억 34백만원 대비 49.3%인 총 42억 57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표] 참조)

[표] 2025년도 서울소방재난본부 사고이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관리부서	사 업 명	통계목	예산 현액	사고 이월액	집행 잔액	이월률 (%)	이 월 사 유
합 계			8,634	4,257	1,385	49.3	
소방행정과	거여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시설비	471	206	3	43.7	○ 거여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공사(시설비) - '25.10월 중 착공 계획이었으나, '25.9월 국가 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발주가 지연되어 '25.11월 착공(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
	거여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감리비	103	31	0	30.1	○ 거여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감리(감리비) - '25.10월 중 착공 계획이었으나, '25.9월 국가 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발주가 지연되어 '25.11월 착공(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
재난대응과	한강안전시스템 운영	시설비	699	101	598	14.4	○ 월드컵 올림픽 구리암사태교 CCTV 신규 구축(시설비) - 사업수행 중지로 인해 명시이월 되었던 정보통신공사 잔금에 대해 '26.11.20.까지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이월
재난대응과	소방학교 실화재 훈련장 건립	시설비	6,653	3,480	777	52.3	○ 실화재 훈련장 건립(훈련설비 훈련건물) 공사구축(시설비) - '25.6월 설계용역 이후 계약 사전절차가 지연 - '25.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주가 지 연되어 25.11월 착공(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
재난대응과	소방학교 실화재 훈련장 건립	감리비	354	354	0	100	○ 실화재 훈련장 훈련건물 감리(감리비) - '25.6월 설계용역 이후 계약 사전절차가 지연 - '25.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주가 지 연되어 25.11월 착공(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
안전지원과	전산시스템 보강 및 유지관리	전산 개발비	353	85	7	24.1	○ 지능형 소방력(용수) 모바일 플랫폼 구축(전산개발비)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모바일 전자 정부 운영 인프라의 정상 가동이 어려워 사업 중 지 및 계약기간('26.6월) 연장으로 이월

49) 사고이월이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에 규정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사항으로서 회계연도내에 지출원 인행위를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등을 말함.

- 먼저, ‘거여119안전센터 이전·신축’ 사업은 송파구 위례지구 택지개발⁵⁰⁾로 인한 유입인구 증가 및 고층화로 소방력 추가배치가 필요함에 따라 거여119안전센터를 이전 신축하려는 것으로, 당해연도 예산현액 5억 74백만원(시설비 4억 71백만원, 감리비 1억 3백만원) 중 40.5%인 2억 37백만원(시설비 2억 6백만원, 감리비 3천 1백만원)을 사고이월함.

[표] 거여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사업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산30(위례택지개발지구)
- 사업기간 : (변경전) '23. 4월 ~ '26. 9월 ⇒ (변경후) '23. 4월 ~ '27. 5월
⇒ 변경사유 : 적정공사기간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24)에 따라 표준 작업량, 유사사례 등을 검토하여 기간 산정
- 소요예산 : 163억원(사비 163억원 / 토지비 51.4억원, 공사비 88억원, 감리비 등 23.6억원)
[당초계획] 122억원(사비 122억원 / 토지비 51.3억원, 공사비 등 71,1억원)
- 규 모 : 지상3 / 지하1층, 연면적 1,477.53㎡, 부지면적 1,500㎡
[당초계획] 지상3 / 지하1층, 연면적 1,290㎡, 부지면적 1,500㎡
- 예산변경 (단위 : 천원)

사업명	'25년 기정예산	'25년 추경예산 조정안	'25년 추경예산	증감액
거여119안전센터 이전·신축	2,023,923	-1,476,412	547,511	△1,476,412

○ 기간변경

구 분	설계공모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 진행
변경전			'24. 10. ~ '25. 3. (5개월)	'25. 5. ~ '26. 9.
변경후	'24. 2. ~ '24. 4.	'24. 7. ~ '24. 10.	'24. 10. ~ '25. 7. (9개월)	'25. 10. ~ '27. 5. (진행 중)

※ 당초 25년 10월 공사 착공 예정이었으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2025.9.26.)으로 11월 착공하였음.

○ 이전 부지 위치도 (송파구 거여동 산30/위례택지개발지구)



50)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거여동, 성남시, 하남시 일원을 대상으로 2006. 07. ~ 2022. 12.(개발면적 6,754천㎡, 주택건설 총 44,458호) 택지 개발 예정 지구로 지정되어 추진된 사업

- 이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25.9.26.)’⁵¹⁾로 조달청 나라장터 등 주요 정부 전산시스템이 마비되어 건축공사 입찰 추진 등의 행정 절차가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게 됨(아래 [표] 참조)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착공시점(당초 ‘25.10월)이 지연(‘25.11.19.)되어 당해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 및 감리비를 이월한 것임.

[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지연 사업 현황

연번	사업명	장애시스템명	정상화 시점	정상화이후 추진경과
1	거여119 안전센터 이전 신축	나라장터	2025.10.10.	(25.10.21.) 건축공사 입찰공고 (25.10.23.)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체결 (25.10.28.) 건축공사 개찰 (25.11.17.) 공사계약 체결 (25.11.19.) 건축공사 착공 (~현재) 토목공사 진행 중
2	소방학교 실화재훈련장 건립	나라장터	2025.10.10.	(25.10.10.) 훈련시설 사전규격 재공개 (25.10.21.) 건축공사 입찰공고 (25.10.28.) 건축공사 개찰 (25.11.5.) 훈련시설 제안서 평가 (25.11.24.) 건축공사 착공 (25.11.24.) 훈련시설 착수 (~현재) 건축공사, 훈련시설 구축 진행 중
3	전산시스템 보강 및 유지관리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 시스템	2025.12.29. (공문, 일부 서비스 재개) 2026.3.20. (공통기반 연계 서비스 재개)	(26.3.31) 사업 재개 요청 건 접수 (26.3.31) 사업 재개 검토 보고 및 회신 (26.4.1) 시범 운영 계획 수립 (26.4.29)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 사용 신청 (~현재) 26.6.5(금) 준공예정

51)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 발생일시 : 2025.9.26.
- 발생장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
- 원 인 : 무정전 전원장치(UPS)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교체 작업을 진행하던 중 배터리가 폭발
- 주요피해 : 1등급 12개, 2등급 58개 등 정부시스템 마비(나라장터시스템, 모바일 신분증, 국민신문고, 정부24, 국가법령정보센터, 인터넷우체국 등)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라는 예측할 수 없던 불가피성이 인정되나 동 사업은 2024회계연도에도 설계 용역의 예상공정률 대비 실제 공정률이 저조하여 사고이월이 발생한 사례⁵²⁾가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이와 같은 연례적인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한편, 상기 [표]를 살펴보면 동일한 사유(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소방학교 실화재훈련장 건립’ 사업과 ‘전산시스템 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도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음.

- 우선 ‘소방학교 실화재훈련장 건립’⁵³⁾ 사업의 경우 ‘25.10월 이후에야 계약 관련 행정절차가 재개되면서 ‘25.11.24.일 예야 공사가 착수(당초 ‘25.10월)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해진 시설비 34억 8천만원과 감리비 3억 54백만원을 이월한 것이며,

52) 2024회계연도 예산 편성 당시 예상공정률을 95%로 예측하고 설계용역비 2억 8천 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4.12. 기준 실제 공정률이 70% 수준에 그쳐 당해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금액 3천 8백만원을 사고이월

53) 실화재 훈련장 건립사업 개요

- 위 치 : 서울소방학교 내(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1)
- 사업기간 : (당초) '24. 01월~'25. 9월 ⇒ (변경후) '24. 01월~'26. 12월
- 변경사유 : 훈련시설 보강 및 회복공간 증설, 서울특별시 「공공건축 사업계획사전검토」 사업기간을 반영, 설계용역 기간 증가로 사업일정이 14개월 증가되었음
- 소요예산 : 152억원(소방특별회계 145.8억원, 국고보조 6.2억원)
- 규 모 : 지상3 / 지하1층, 연면적 1,961.83㎡, 건축면적 1,449.69㎡
- 공간구성 : 실화재 훈련상황센터, 실화재 훈련장 및 훈련 부속시설
- 추진일정

구 분	설계공모	⇒	실시설계	⇒	공사시공	⇒	준공 및 시범운영
최초			'24. 4. ~ '24. 9.(6개월)		'24. 10. ~ '25. 9.(12개월)		'25. 10.
변경1	'24. 1. ~ '24. 3.		'24. 5. ~ '25. 2.(10개월)		'25. 3. ~ '26. 4.(14개월)		'26. 5.
변경2			'24. 6. ~ '25. 6.(13개월)		'25. 9. ~ '26. 10.(13.5개월)		'26. 11. ~ 12.

※ 실화재 훈련장 세부 공간구성

구분	훈련장(5종)	훈련상황센터	훈련 부속시설	환경오염 방지시설
세부 내역	화재성상, 화재진압, 백드래프트, 지휘전술, 복합전술	상황실, 강의실, 세척실	샤워실, 탈의실, 회복실, 목재연료저장소, 폐목처리저장소	정화시설(집진·배연설비), 신재생에너지 시설

- ‘전산시스템 보강 및 유지관리’⁵⁴⁾ 사업은 지능형 소방력(용수) 모바일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이 역시 핵심 인프라인 모바일전자정부(공통기반)시스템 복구가 장기화(정상화 시점 ‘26.3.20.)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당해연도 사업을 중지하고 예산 현액 3억 53백만원 중 8,500만원을 이월한 것임.

- 다음으로 ‘한강안전시스템 운영’ 사업은 시설비 6억 99백만원 중 ‘CCTV 영상감시 관제시스템 구축(월드컵·올림픽·구리암사대교)’과 관련하여 물품구매계약 과정에서 2순위 업체(비엔에스테크)가 우선협상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이 이를 계약 무효 판결하였고 이에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이와 연계된 정보통신공사의 연내 준공이 불가능해져 해당 잔

54) 지능형 소방력 모바일 플랫폼 구축 개요

- 사업명 : 지능형 소방력(용수 등) 모바일 플랫폼 구축
- 계약기간 : (변경전) ‘25.6.5. ~ ’25.12.5. ⇒ (변경후)‘25.6.6. ~ ’26.6.5.
⇒ 변경사유 :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25.9.26) 화재로 사업기간 변경
- 계약자 : (주)내가시스템(대표자 신형일)
- 소요예산 : 금417,400,000원(전산개발비 290,528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26,872천원)
- 과업내용 : 현장에서 바로 접속 가능한 모바일 기반 소방행정시스템 구축
-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통계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E=A-B-C)	비 율(%)		
						집행률 (B/A)	이월률 (C/A)	불 용률 (E/A)
총계		417,400	314,997	85,005	17,398	75.5%	20.4%	4.2%
지능형 소방력(용수 등) 모바일 플랫폼 구축	전산개발비	290,528	198,345	85,005	7,178	68.3%	29.3%	2.5%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6,872	116,652	-	10,220	91.9%	0%	8.1%

※ 외부 재난(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업 중단이 주요원인임.

○ 추진일정

구 분	당초 일정	변경일정	비고
계약기간	‘25.6.5 ~ ’25.12.5	‘26.6.5. ~ ’26.6.5	기간 연장
과업중지	-	‘25.10.1.	-
과업재개	-	‘26. 4.1.	재개시점
준공일자	‘25.12.5.	‘26.6.5.	

금인 1억 1백만원을 사고이월한 것으로,

- 이는 앞서 동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사유에서 언급한 바(본문 p.37 ‘한강안전시스템 운영’ 검토의견 참고)와 같이 당초 1순위 낙찰업체가 입찰 참가 자격인 직접생산확인과 무관한 타사 제품을 제안서에 포함시켜 평가를 받은 후 기술협상 과정에서 자사 제품으로 변경하는 등 입찰 절차 공정성을 훼손한 명백한 입찰자격 위반행위라는 점에서 살펴볼 때,
- 심사 단계에서 서류의 진위여부와 적격성을 면밀히 검증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이와 연계된 정보통신공사 역시 연내 추진이 불가하여 결국 사고이월을 초래하였는바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입찰 자격의 면밀한 검증을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붙임]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연 번	구 분	시 정 권고사항	내 용	조 치 계 획	소 관 실 국 (부 서 명)
33	시정 권고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편성 후 미집행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등을 지역 일간신문에 인정공표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소방청 지침에 의거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갈음 처리함에 따라 전액 미집행됨. 집행이 불필요한 상황이 반복되는 세부사업(통계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여건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의 노력이 필요함.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인정 예정 공고 시 소방청 지침에 의거 신문 공고 대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갈음처리가 가능하여 2026년도 예산에 미 편성하였고 앞으로도 별도 예산 집행 없이 소방청 지침에 의거 보도자료 배포하는 것으로 업무 추진하겠음.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예 방 과)
9	개선 건의	불용품 매각대금 등 세입예산 추계 정확성 제고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 편성 단계에서 실제 운영자료와 통계자료를 보다 종합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특히 불용차량 매각대금의 경우 차량 내용연수뿐만 아니라 불용 유보 여부, 신규 증차 계획, 실제 운행 상황, 매각 가능 시기 등 다양한 변수를 함께 고려하여 보다 현실적인 추계를 실시해야 할 것임.	최초 예산 추계는 불용차량 예상 대수(차량 내용연수 경과)를 기준으로 전년도 5월에 산정됨. 반면, 신규 증차를 위한 예산 확정은 전년도 10월에 결정되고 불용 유보 여부, 실제 운행 상황, 매각 가능 시기 등을 고려한 최종 불용차량 대수 결정은 연말에 내려져 최초 추계 단계에서 모든 변수를 반영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5월의 1차 추계에 더해, 제반 여건이 구체화되는 10월경에 ‘2차 추계’를 실시함으로써 예산 추계의 오차를 최소화하겠음.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10	개선 건의	소방활동 환경개선 예산 불용 최소화 필요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시설비) 예산은 화재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결되는 예산으로,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등 화재 취약지역에 적절한 소방용수시설이 설치·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집행되어야 함.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바, 협업기관인 수도사업소의 적극적 협조를 유도하는 등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을 건의함.	향후에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수도사업소와 협의를 강화하고, 추진상황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음. (우수 수도사업소 직원 대상 연말 표창 추천 포함) 또한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적기에 계획을 조정하는 등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소방용수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설치·관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33.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편성 후 미집행

[예방업무 추진 향상 / 소방재난본부]

가. 현황 및 문제점

예방업무 추진향상(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예산은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등을 지역 일간신문에 인정·공표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소방청 지침에 의거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갈음 처리함에 따라 전액 미집행됨.

2025년 예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예방업무 추진 향상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500	0	1,500	100%

※ 예산 산출근거 : 지역 일간 신문지면(10cm×15cm)×1식 = 1,500천원

본 예산은 2024년까지는 ‘사무관리비’에 포괄 편성되었으나, 2025년부터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통계목인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분리하여 편성되었음. 예산 과목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무관리비 내에 혼재되어 표출되지 않던 예산이 드러나 해당 통계목에서 전액 불용이 발생함.

나. 시정권고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등을 지역일간신문에 공표하는 대신 보도자료 배포로 갈음 처리한 것은 예산 절감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으나, 집행이 불필요한 상황이 반복되는 세부사업(통계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여건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의 노력이 필요함.

09. 불용품 매각대금 등 세입예산 추계 정확성 제고

[세입 결산 / 소방재난본부]

가. 현황 및 문제점

임시적 세외수입인 불용품 매각대금은 소방차량, 기타 물품 등의 노후화로 사용이 불가능한 자산을 매각하여 발생하는 수입으로, 2025년 세입예산 편성액 329백만원 대비 실제 징수액은 199백만원에 그쳐 약 39.3%의 차이가 발생하였음. 이는 불용품 매각대금 예산편성액의 97%(318백만원)를 차지하는 불용차량 매각대금 세입예산 추계의 오차 때문임.

불용차량 매각대금 세입 현황

(단위 : 대, 천원)

구 분		2025년 예산추계			실제 매각 세입	
차 종	내용연수	매각대수	평균매각단가	징수전망	매각대수	세입금액
계		65		318,000	33	196,617
추계 차량 세입 합계					27	163,826
고가차	12년	3	15,000	45,000	2	28,920
굴절차		1	12,000	12,000	1	23,150
조명배연차		3	5,000	15,000	0	0
펌프차	10년	5	7,000	35,000	2	6,100
물탱크차		3	7,000	21,000	0	0
화학차		3	9,000	27,000	1	7,666
지휘버스	8년	1	5,000	5,000	0	0
구조버스		5	3,000	15,000	5	18,450
순찰차		1	3,000	3,000	1	1,850
행정차		20	3,000	60,000	0	0
구급차	5년	20	4,000	80,000	15	77,690
추계 외 차량 세입 합계					6	32,791
구조공작차	8년	추계 외 불용차량			1	11,700
이륜차					4	18,991
고무보트	7년				1	2,100

2025년도 불용차량 매각대금 세입예산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원인은 불용차량 최종 확정 대수의 미반영 때문으로 보임. 최초 차량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추계(2024. 4월)한 이후, 소방차량 교체 예산이 확정된 시점(2024. 11월)에 변동된 불용차량 최종 확정 대수를 반영하여 세입을 조정했어야 하나, 이 과정이 누락되어 세입예산 추계에 오차가 발생함.

최근 5년간 불용차량 매각 추계 및 실제 불용 현황

(단위 : 대, 천원)

연도	2025년 예산추계		실제 매각 세입			오차범위		
	추계대수	추계 금액	불용대수	매각대수	세입 금액	오차대수	오차 금액	오차율
2021	51	323,790	56	28	143,931	△23	△179,859	△44.5%
2022	60	266,500	110	67	520,159	7	253,659	195.2%
2023	60	249,000	101	58	313,996	△2	64,996	△126.1%
2024	34	195,000	63	96	552,102	62	357,102	283.1%
2025	65	318,000	52	33	196,617	△32	△121,383	△61.8%

또한, 단순히 차량 내용연수만을 기준으로 불용차량 매각대금을 추계하는 방식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실제로 일부 차량은 예비 출동 차량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불용이 유보되거나, 신규 증차 계획 및 현장 운행 여건에 따라 사용 기간이 연장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변수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경우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큼.

나. 개선건의

따라서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 편성 단계에서 실제 운영자료와 통계자료를 보다 종합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

음. 특히 불용차량 매각대금의 경우 차량 내용연수뿐만 아니라 불용 유보 여부, 신규 증차 계획, 실제 운행 상황, 매각 가능 시기 등 다양한 변수를 함께 고려하여 보다 현실적인 추계를 실시해야 할 것임.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는 단순한 수치 관리 차원을 넘어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인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추계 기준 마련이 필요함.

10. 소방활동 환경개선 예산 불용 최소화 필요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 소방재난본부]

가. 현황 및 문제점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시설비) 사업은 화재현장에 필요한 용수를 신속하게 급수하여 효과적인 화재진압 작전 수행 및 중단없는 급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8,699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8,305백만원을 집행하고, 394백만원(불용률 4.5%)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세부사업 기준 예산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시설비	8,699	8,305	394	4.5%

세부사업 내 기관별 예산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수도사업소 등(9개소)				소방서(25개소)			
재배정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재배정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7,265	6,929	335	4.62%	1,399	1,375	24	1.75%

본 예산은 소방서별 관련 공사를 개별 계약 건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증대(연간 정비 가능 수량 증가 기대)가 가능하도록 9개 수도사업소(자재관리센터 포함)* 및 25개 소방서**에 재배정하여 집행하고 있으나,

* 수도사업소 등 : 소화전 설치·교체·보수·이설, 맨홀정비

** 소방서 : 비상소화장치 설치·교체·보수·이설, 소방용수시설 도색 및 보온

수도사업소에서 본연의 업무인 상수도 노후밸브 정비를 우선 추진하고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공사는 후순위로 배정함에 따라, 사업 지연 및 예산 불용이 발생함.

수도사업소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기관명	재배정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집행내용
계		7,265,313	6,929,962	335,351	4.62%	
1	중부수도사업소	1,163,380	1,120,149	43,230	3.72%	각 자치구 고장 소화전 보수, 노후 밸브 교체, 포장도로 굴착 복구비 납부 등
2	서부수도사업소	685,350	663,855	21,495	3.14%	
3	동부수도사업소	817,270	812,856	4,414	0.54%	
4	북부수도사업소	722,746	698,922	23,824	3.30%	
5	강서수도사업소	587,586	546,511	41,075	6.99%	
6	남부수도사업소	581,606	580,553	1,053	0.18%	
7	강남수도사업소	1,113,600	1,106,407	7,193	0.65%	
8	강동수도사업소	607,220	607,219	1	0.00%	
9	수도자재관리센터	986,555	793,489	193,066	19.57%	

최근 5년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2021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시설비)	6,208	5,991		217	3.4%
2022		7,012	6,824		188	2.6%
2023		7,935	7,333	119	483	6.1%
2024		8,970	8,530		440	4.9%
2025		8,699	8,305		394	4.5%

나. 개선건의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시설비) 예산은 화재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결되는 예산으로,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등 화재 취약 지역에 적절한 소방용수시설이 설치·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집행되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바, 협업기관인 수도사업소의 적극적 협조를 유도하는 등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을 건의함.